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마련 방안

이혜숙 조윤정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마련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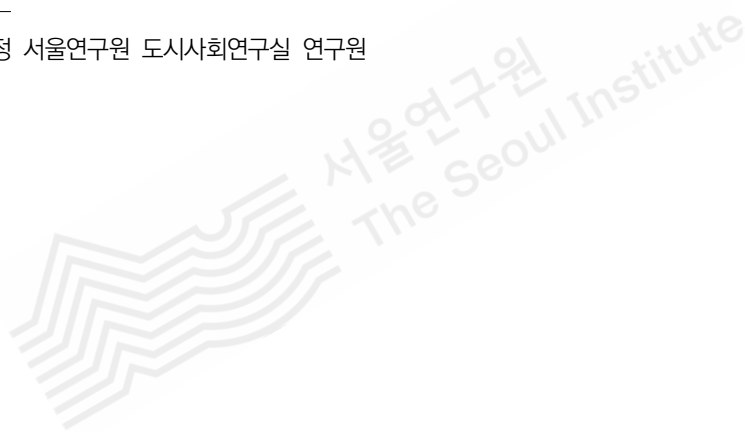


연구책임

이혜숙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조윤정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울형 대안학교, ‘최소한의 기준’ 제시하고 지정 후 교육 질 담보하는 다각적 지원 필요

서울시, 올 초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계획 발표, 지정기준·운영전략 필요

서울 시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나오는 청소년 수가 매해 1만여 명에 이르고, 2017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8만여 명(윤철경 외, 2019)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2년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과 진로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비인가 대안학교에 교사 인건비,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 ‘2019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에서 그간 수행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보다 한 차원 발전한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려면 ‘서울형 대안학교’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질 것인지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표에 부합하는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71곳 운영 확인... 운영방식별로 현황 차이 커

서울 시내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 조사 결과, 현재 파악된 비인가 대안학교는 71개소이고, 이 중 59개 기관이 현황 조사에 참여하였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운영방식에 따라 전일제형과 공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일제형은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전일제 학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대안적 진로 모색이나 공교육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공간형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거점으로 정보제공과 다양한 학습, 체험, 진로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등 사회적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아 교육 공간이자 돌봄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유형의 차이는 이용자 수, 상근교사 수, 시설 현황, 수업료 등에서도 큰 차이로 이어졌다. 전일제형은 공간형보다 학생 수가 0.6배가량 적고, 상근교사 수는 2배가량 많았다. 공간형은 수업료가 무료인 곳이 80% 이상인 반면, 전일제형은 85.7%가 수업료를 받고 있었고 수업료 또한 38만 원으로 공간형보다 2배 이상 비쌌다.

[표 1]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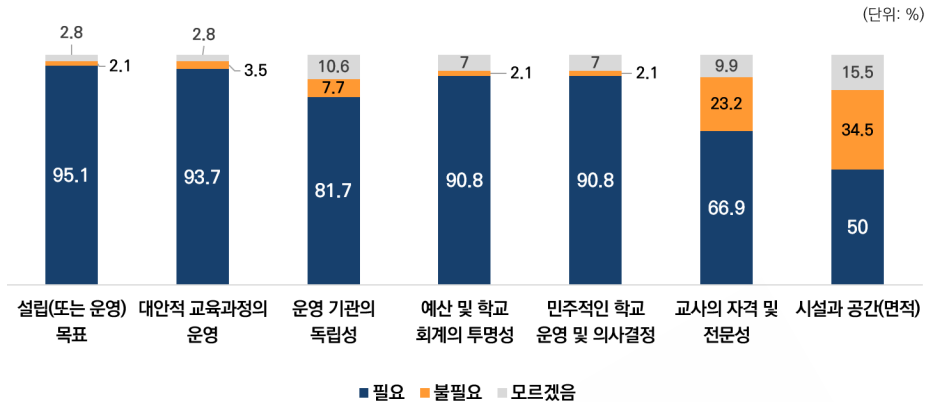
구분		전일제형	공간형
조사기관 수		42개소	17개소
운영방식		일반학교와 유사한 전일제 방식	공간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중심 운영
이용자 수 평균		28.8명	44.8명
상근교사 수 평균		5.8명	2.9명
수업료	유료 기관 수	36개소(85.7%)	4개소(23.5%)
	평균액	38만 원	17만 원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73% “필요” … 97% “현 상태 고려한 기준 마련”

비인가 대안학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과 지정 기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도입 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73.2%)이 불필요하다는 의견(6.3%)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 기준의 준거로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한 기준 마련’(96.5%)과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학습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준 마련’(88.7%)에 높은 지지를 표명하였다. ‘대안학교 설립·인가 기준 및 각종 학교의 설립·인가 기준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54.9%)에는 절반 정도만 찬성의 입장을 표시하였다. 이는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가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으로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에 지지 입장을 나타낸 반면, 인가형 대안학교에 준하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정 기준 항목별로 ‘설립(또는 운영) 목표’(95.1%), ‘대안적 교육과정 운영’(93.7%),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의사결정’(90.8%), ‘예산·회계의 투명성’(90.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비해 ‘교사의 자격과 전문성’(66.9%), ‘시설과 공간’(50.0%)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사 자격 기준과 시설 기준이

서울형 대안학교 진입장벽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거나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을 우려한 결과로 추측된다. 간담회에서는 서울형 대안학교는 최소한의 교육의 질과 공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되, 다만 그 기준을 각 기관이 충족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림 1]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항목별 필요성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교육기회·무상 제공 등 5가지 원칙으로 추진해야

서울형 대안학교의 정책 목표를 ‘학교 밖 청소년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즉 서울시는 학교교육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공공교육에 준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공지원을 확대해 대안교육의 공공성 강화, 둘째, 서울형 대안학교의 책무성 강화, 셋째, 교사·교육의 전문성 향상, 넷째, 교육의 다양성 강화, 다섯째,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 절차 확보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향후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5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제1원칙은 ‘교육기회 제공의 원칙’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외 진로·직업 탐색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원칙 ‘무상 제공의 원칙’에 따르면,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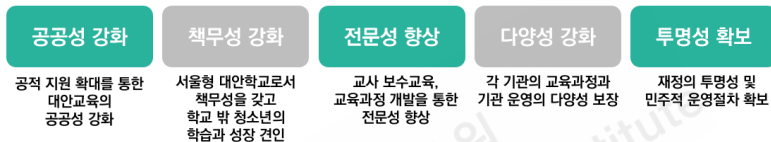
밖 청소년에게는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3원칙은 ‘보충지원의 원칙’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소 환경 마련을 지원하고, 교육활동비·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학교 밖 청소년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4원칙 ‘자율성 및 독립성의 원칙’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과 운영을 보장하되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5원칙은 공공성의 원칙으로, 교육의 목적인 공익을 추구하며 책무성을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 표

학교 밖 청소년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양질의 교육 제공

- 학교교육 중단 여부와 관계 없이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기회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제공

정책방향



[그림 2] 서울형 대안학교 목표와 정책 방향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실태 고려해 학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 제시

서울형 대안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 진로 탐색을 추구하는 자율적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서울시 지정 기준을 구비한 대안교육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정 기준 항목은 교육활동을 위한 핵심 요소인 ‘교사 인력(교사 자격)’, ‘교육공간’, ‘교육과정’을 기본적인 필수 기준 항목으로 설정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과 민주성’을 부가 기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항목별 지정 기준의 수준을 높이면 해당하는 기관이 적기 때문에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기존 비인가 대안학교가 서울형 대안학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교육공간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 보장 등 학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교사 자격은 교원자격 외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유관 국가교육자격증 소지자로 설정하였다. 현재 교사 인력은 비인가 대안학교에서의 교육경력을 인정하고, 신규 인력에게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공간은 학교 밖 청소년도 쾌적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인당 최소 면적 기

준을 설정하였다. 인가형 대안학교 기준을 적용하여 최소 건물 면적 기준을 1인당 초 등 3.3㎡와 중등 7㎡로 세웠다. 이에 서울시는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최소 면적 이상의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자율적 교육과정을 존중하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교육내용은 사회와 관련 내용(시민의식, 지역사회 이해, 인권, 평등, 공동체, 정의 등)으로 구성하고, 최소 운영 시간은 향후 지침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부가 기준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의 독립성,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대안학교 지정 후 ‘교육 질 담보하계’ 주기적 컨설팅 등 다각도 지원 필요

서울시는 지정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예산 지원은 인력과 관련된 인건비, 공간·시설과 관련된 임차비, 교육과정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와 수업료 지원을 포함한다. 둘째,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의 최저 기준을 비인가 대안학교가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은 선발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탈락 기관 또한 최저선을 맞추도록 평가 결과 피드백을 활용하게 해야 한다. 셋째, 주기적인 컨설팅으로 서울형 대안학교의 질을 관리·유지해야 한다. 컨설팅단은 대안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2년마다 컨설팅을 시행해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 교사 대상 보수교육 계획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정 기준의 하나로 교사의 자격을 두었지만, 이는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교육 트렌드와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역량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 매뉴얼 마련

-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 지원을 위한 매뉴얼 마련
- 인건비, 임차비, 운영비, 수업료 지원 관련 세부 지침 마련

지정 평가 결과 피드백 제공

- 지정결과 피드백을 통해 탈락기관 또한 최저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주기적 컨설팅 실시

- 대안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후 2년마다 실시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 교육 트렌드와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사 재교육을 실시하여 교사 전문성 강화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관리 전담조직 마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후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담당할 전담 조직 필요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임

[그림 3]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관리 전략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과 목적	2
2_연구내용과 범위	3
3_연구방법	4
4_연구 추진체계	8
02 학교 밖 청소년과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정책	10
1_학교 밖 청소년 개념과 현황	10
2_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	13
3_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업	20
03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분석	30
1_기본 현황	30
2_인력 현황	34
3_이용자 현황	37
4_시설 현황	40
04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과 지정 관련 의견조사	46
1_조사개요	46
2_설문조사 결과 분석	48
3_FGI 결과 분석	58
4_소결과 시사점	67

05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과 운영전략	72
1_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목표와 방향	72
2_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	75
3_서울형 대안학교 운영 전략과 정책 제언	80
 참고문헌	 89
 부록	 91
 Abstract	 112



표 목차

[표 1-1]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조사 항목	6
[표 2-1] 서울시 연도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12
[표 2-2] 전국 대비 서울 학업중단 학생 현황(2018학년도)	12
[표 2-3]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2018학년도)	13
[표 2-4] 학력인정 여부에 따른 대안학교 유형	15
[표 2-5]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교육과정)	16
[표 2-6] 인가형 대안학교 교사배치 기준(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16
[표 2-7] 인가형 대안학교 교사의 기준 면적	17
[표 2-8] 인가형 대안학교 옥외체육장의 기준 면적	17
[표 2-9]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안) 현황	19
[표 2-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대안)	19
[표 2-11]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예산(안)	21
[표 2-12] 서울시 지원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44개소)	22
[표 2-13]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내용	24
[표 2-14]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내용	25
[표 2-15]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주요내용	26
[표 2-16] 서울시 지원 대안교육기관과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시 지원 내용 비교	27
[표 3-1]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유형별 특성	31
[표 3-2]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유형별 현황	31
[표 3-3]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현황	33
[표 3-4] 특정 대상 비인가 대안학교	34
[표 3-5] 비인가 대안학교 상근교사 및 강사 수	35

[표 3-6] 비인가 대안학교 인력 현황	35
[표 3-7] 비인가 대안학교 상근교사 급여 지급 방법 및 월 급여	36
[표 3-8] 상근교사 자격증 소지비율	36
[표 3-9] 비인가 대안학교 이용자 수	38
[표 3-10] 전일제형 비인가 대안학교 급별 이용자 수	38
[표 3-11] 비인가 대안학교 이용자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구간별 현황	38
[표 3-12] 비인가 대안학교 이용료(수업료·입학금·급식비) 부과 기관	39
[표 3-13] 비인가 대안학교 수업료 구간별 현황	40
[표 3-14]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 현황	41
[표 3-15] 비인가 대안학교 임차비용 및 시설면적 평균	42
[표 3-16]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사용 방식	42
[표 3-17] 시설 보유 현황	43
[표 4-1]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설문조사 내용	47
[표 4-2] FGI 간담회 개최 현황	47
[표 4-3]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 인지 여부	48
[표 4-4] '서울형 대안학교' 지향점 우선순위	49
[표 4-5] '서울형 대안학교'가 중시해야 할 목표 우선순위	49
[표 4-6]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필요 여부	50
[표 4-7]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준거 동의율(근거·원칙)	51
[표 4-8]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항목별 필요도와 우선순위	52
[표 4-9] 교사 자격 기준	52
[표 4-10] 교육과정 기준	53
[표 4-11] 시설관련 기준 항목별 필요성	54
[표 4-12] 교사면적 최소 기준으로 1인당 3.3㎡ 적용에 대한 생각	54
[표 4-13] 서울형 대안학교 적당한 지정 기간	55
[표 4-14]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수업료 부과에 대한 생각	56
[표 4-15] 서울형 대안학교 적정 수업료 비용	56
[표 4-16]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후 수업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	57
[표 4-17] 서울형 대안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57
[표 5-1] 서울형 대안학교 정의와 특징	72

[표 5-2]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설정을 위한 기본원칙	76
[표 5-3] 지정 기준 항목	77
[표 5-4] 대상별 최소면적 기준	78
[표 5-5] 유형별 적용 기준	81
[표 5-6]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시나리오	82
[표 5-7] 지정 이후 예산 지원 시 검토 사항	8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8
[그림 5-1] 서울형 대안학교의 지향점	73
[그림 5-2] 서울형 대안학교의 목표와 정책 방향	75
[그림 5-3] 서울형 대안학교의 지정 절차	83



01

연구개요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내용과 범위

3_연구방법

4_연구 추진체계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수 매해 1만여 명

- 서울시에는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나오는 학교 밖 청소년이 매해 1만여 명에 이르고 있음(2018년 기준 11,837명, 교육통계)
 - 윤철경 외(2019)는 서울 지역의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8만여 명(2017년 기준)으로 추계하였음
- 그동안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¹⁾를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2년에 ‘학교 밖 청소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집중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를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변경·운영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음
 - 또한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비 및 학습교사 인건비,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및 급식비를 지원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과 진로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외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턴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1) ‘비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서 지칭하는 ‘대안교육기관’과 같은 의미로 사용함

■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지원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주목

- 서울시는 올해 초 ‘2019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2019. 1. 29.)²⁾에서 현재의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보다 한 차원 높은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려면 ‘서울형 대안학교’가 무엇이며, 어떤 지향과 목표를 가질 것인지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목표에 부합하는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서울형 대안학교는 서울시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비인가 대안학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설정해 향후 비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형 대안학교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대안학교의 운영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_연구내용과 범위

1) 연구내용

- 학교 밖 청소년 개념과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정책
-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현황 분석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의견조사 분석
- 서울형 대안학교의 개념과 목표, 운영 방향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과 운영 전략

2) 서울시 보도자료, 2019. 1. 30., “서울시,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해 학교 밖 청소년에 공교육 수준 학습권”.

2) 연구범위

- 대상의 범위는 인가 대안학교를 제외한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함
 - 다만, 현황 조사나 의견조사는 이 연구에서 파악한 비인가 대안학교로 한정함
-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현황 분석의 내용적 범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도시형 대안학교와 징검다리 거점공간 외 이 연구에서 파악한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설정과 관련된 내용적 범위는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공간과 면적, 자격 등을 포함함. 이는 인가형 대안학교에서 요건으로 보고 있음
-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는 서울 지역으로, 2019년 현재 기준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전략은 향후 전략을 포함함

3_연구방법

1) 문헌 연구

-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 대안학교 관련 선행연구 고찰·분석
- 대안학교 관련 법률 및 조례 검토·분석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계획 및 현황 자료 분석

2) 면담조사와 FGI

(1) 면담조사

-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과 더불어 면담조사를 실시함
- 면담조사는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43개 비

인가 대안학교 중 전일제형과 공간형³⁾으로 구분하여 2019년 5월부터 7월 초까지 실시함

(2) FGI

- 서울형 대안학교의 정책 도입 및 지정 기준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I: Foco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함⁴⁾

3) 설문조사

(1) 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 조사 목적 및 대상

- 현황 조사의 목적은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이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 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함
 - 현재(2019년 6월 기준)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는 인가 대안학교와 달리 신고제⁵⁾나 등록제가 아니어서 소재 기관 수나 재학 청소년 수 등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음

■ 조사 기간 및 방법

- 현황 조사는 2019년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 조사 방법은 웹으로 조사 항목을 구축하여 온라인 조사와 이메일 조사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함

■ 조사 대상과 회수

- 조사 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71개소임(서울시 지원 44개소 / 미지원 27개소)(부록 1 참조)

3) 이 구분은 연구 편의상 구분으로, 전일제형은 일반 학교체계로 운영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전일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고, 공간형은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임.

4) 구체적인 FGI조사는 제4장 1절 참조

5) 2019년 9월 26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대안학교 관련 민간단체⁶⁾에게 서울시 청소년정책과가 지원하고 있는 43개 기관 포함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목록을 제공받아 확인⁷⁾
-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71개소 중 59개소가 응답(83.1%)
 - 서울시 지원 44개소(100%)⁸⁾ 및 서울시 미지원 15개소(55.6%) 응답

■ 조사 항목

- 조사 항목은 기본 현황, 운영 현황, 인력 현황, 시설 현황, 재정 현황 등 5가지 부문임([표 1-1] 참조)
- 운영방식에 따라 전일제형과 공간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표 1-1]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조사 항목

대 항목	세부 항목
기본 현황	설립연도, 단체유형, 운영방식, 서울시 지원 여부 등
운영 현황	운영과정, 모집대상, 참여자 수 등
인력 현황	상근교사: 인원, 급여, 평균 근속연수, 자격증 보유현황 상근교사 외: 행정, 급식, 기타 인력 유무 및 급여 현황
시설 현황	소유 및 임차현황, 용도별 공간 유무 및 면적, 시설 사용방식 등
재정 현황	이용자 부담경비, 연간 세입 세출현황

(2) 의견조사 위한 설문조사

■ 조사목적과 대상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도입 관련하여 현장관계자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총 71개 비인가 대안학교 중 미참여 의사를 밝힌 1개 기관을 제외한 70개 기관 교사와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함

6) 기독교대안학교연맹에서 100개 기관, 서울지역 도시형 대안학교 협의회에서 82개 기관 리스트 확보

7) 유치원과정 혹은 대학과정만 운영하는 곳, 국제학교,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되는 곳, 연락이 되지 않고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곳은 제외

8)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지원 43개소, 여성정책과 지원 1개소, 총 44개소

■ 조사 방법

-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을 구축하여 기관별로 담당자가 온라인 설문을 교사와 행정 담당 직원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 주소를 재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조사 기간

- 2019년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함

■ 설문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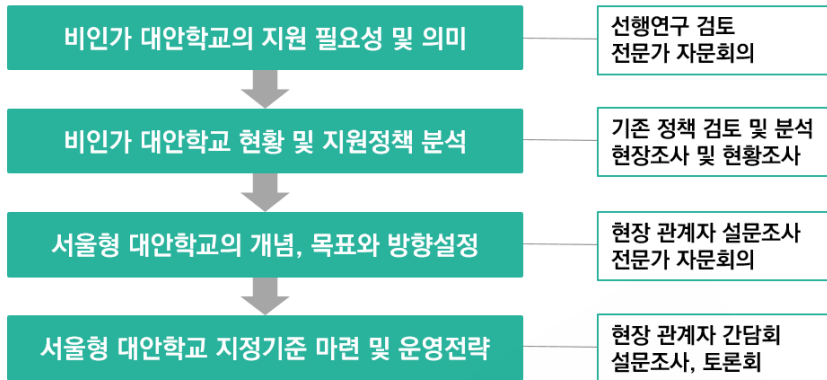
- 설문 참여를 요청한 70개 기관 중 33개 기관에서 총 155명에게 배포하였고 이 중 142명이 응답함

4) 자문회의 및 토론회

- 서울형 대안학교 제도 도입 관련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초기부터 대안교육·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
 - 현황 조사와 지정 관련 의견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검토하는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함
 - 현황 조사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하고자 자문회의를 3회 개최함
-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은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와 관련이 있는 정책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의견을 설문조사와 FGI 등 다각도로 수렴해 지정 기준과 운영 전략을 마련한 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 연구에 반영함
-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지정 기준과 운영 전략, 정책 제언을 마련하는 데 반영함

4_연구 추진체계

- 이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의 지원을 위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는 이 연구의 추진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02

학교 밖 청소년과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정책

1_학교 밖 청소년 개념과 현황

2_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

3_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업

02. 학교 밖 청소년과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정책

1_학교 밖 청소년 개념과 현황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 정규 학교교육을 중단하고 나온 학생을 한동안 학업중단자 또는 학업중단 청소년(학생)으로 지칭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정책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통칭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8.)과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2012. 7. 30.)가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법적으로 명문화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백서(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 2014: 2)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여러 요인으로 자의·타의적으로 정규 학교를 나온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함
 - 여러 요인에는 대안적 진로 모색, 학교부적응, 가정환경, 심리적 방황,

비진학 등 개인적·가정적·사회적 요인 모두가 해당

- 서울시는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2012. 7. 30.)에서 그간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 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노동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음
- 그러나 최근 조례를 개정(2019. 9. 26.)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동일하게 적용
 - 학교 밖 청소년을 “초·중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령기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여러 가지 사유로 아예 정규 학교교육을 받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과 학령기 이후인 후기청소년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함⁹⁾

2)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1)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 서울시 학업 중단율 약 1% 내외

- 지난 5년간 서울시 학업중단 학생 수는 매년 1만 1천 명 내외였고, 학업 중단율은 1% 내외 수준을 유지함
 - 학업 중단율은 2015년 1.09%에서 2018년 1.31%로 0.22%p 증가
 - 2018학년도 기준 학교급별 현황은 고등학교가 1.78%로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초등학교(1.13%), 중학교(1.12%) 순이었음

⁹⁾ 다만, 개정 조례 제2조 1항에서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제1항과 제2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청소년으로 보면, 청소년기본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이면서 제2항에 적용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므로, 학령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후기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음.

[표 2-1] 서울시 연도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수	중단율	학업중단 학생 수	중단율	학업중단 학생 수	중단율	학업중단 학생 수	중단율
2014	12,384	1.39	5,671	1.13	4,028	1.28	6,427	1.87
2015	11,144	1.09	4,437	0.98	2,532	0.96	4,175	1.35
2016	10,950	1.12	4,412	1.01	2,228	0.93	4,310	1.44
2017	11,546	1.23	4,686	1.09	2,329	1.03	4,531	1.60
2018	11,837	1.31	4,792	1.13	2,423	1.12	4,622	1.78

- 주: 1. 학업중단율=(학업중단 학생 수/전체 학생 수)×100
 2. 학업중단 연도기준은 학년도임(2018학년도 학업중단자 수는 2018. 3. 1.~2019. 2. 28. 기준이며, 전체 학생 수는 2018. 4. 1. 기준)
 3. 학업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4.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 기타), 면제(질병, 해외출국, 기타)가 해당
 5. 고등학교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 퇴학(품행), 제적, 유예, 면제가 해당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2018 간편한 서울교육통계」: 48.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 서울 학업중단 학생 수 11,837명으로 전국의 22.5%

- 2018학년도 기준 전국 학업중단 학생 수는 5.2만 명이고, 이 중 서울시 내 학업중단 학생 수는 1.1만 명으로 전국의 22.5%를 차지
 - 이는 서울의 전체 학생 수가 전국 학생 수 중 16.1%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임
 - 서울시 학업중단율이 전국 학업중단율보다 높은 이유는 유학,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수가 전국대비 30.5%로 매우 높기 때문

[표 2-2] 전국 대비 서울 학업중단 학생 현황(2018학년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생 수	학업중단 학생 수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	실질 학업중단 학생 수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수
전국	5,584,249	52,539	27,983	22,775
서울	900,684	11,837	4,560	6,952
전국 대비 서울 비율	16.1	22.5	16.3	30.5

- 주: 1. 실질 학업중단 학생: 가사, 부적응, 자퇴,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
 2. 해외출국 사유에는 유학도 포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실질 학업중단 학생 수는 4,560명(2018학년도 기준)

- 전체 학업중단자 수 중 사유별 학업중단자 수를 비교해보면 초·중학생은 미인정유학,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업중단이(81.3%), 고등학생은 자퇴 부적응, 자퇴 기타사유로 인한 학업중단(76.4%)이 가장 많음(부록 2 참조)
- 실질 학업중단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0.51%를 차지함. 학교급별 실질 학업중단율은 고등학교가 1.2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중학교 0.35%, 초등학교 0.12% 순이었음
 - 실질 학업중단 학생 4,560명 중 고등학생이 71.9%(3,277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중학생 16.8%(767명), 초등학생 11.3%(516명) 순

[표 2-3]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2018학년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생 수	학업중단 학생 수	
			학업중단 학생 수(전체)	실질 학업중단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900,684	11,837	4,560
	비율	100.00	1.31	0.51
초등학교	학생 수	424,800	4,792	516
	비율	100.00	1.13	0.12
중학교	학생 수	216,330	2,423	767
	비율	100.00	1.12	0.35
고등학교	학생 수	259,554	4,622	3,277
	비율	100.00	1.78	1.26

주: 실질 학업중단 학생: 가사, 부적응, 자퇴,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_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

1) 대안교육의 제도화 과정

■ 1990년대 이후 대안적 교육방식 요구 증대

- 우리나라 대안교육은 1980년대 중반부터 방과 후 학교나 주말학교, 혹은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교 형태 등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었음

- 1990년대 우리나라 입시제도 위주의 교육 체계, 과열된 교육열과 경쟁위주의 교육풍토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안적 교육방식의 교육 수요가 늘어남
- 이에 방과 후 학교나 주말학교, 혹은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교 등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었던 대안교육이 전일제방식의 학교형태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남

■ 간디학교 설립 이후 대안학교 제도화 시작

- 1997년 경상남도 산청 지리산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 전일제 대안학교인 간디청소년 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양적으로 성장함
-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 증가와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대안학교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제도권 밖 대안학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음
 - 1998년 특성화고등학교 제도 도입
 - 2001년 위탁형 대안학교 제도 도입
 - 2005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각종학교로 대안학교 인정
 - 2007년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비인가 대안학교의 제도화를 시도

2) 인가형 대안학교 정책

■ 학력 인정의 인가형 대안학교

- 정부의 일부 대안학교 인가에 따라 대안학교는 학력인정을 받는 인가형 대안학교와 그렇지 않은 비인가형 대안학교로 나뉘게 됨
 - 인가형 대안학교로는 각종학교로,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학교·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구분됨
 - 비인가형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맞지 않아 교육감의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대안교육시설임
 - 학력 인정 여부에 따른 대안학교 유형은 [표 2-4]와 같음

[표 2-4] 학력인정 여부에 따른 대안학교 유형

구분		내용	설립 및 지원 근거
인가형 대안학교	각종학교 ¹⁰⁾ 로서 대안학교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특성화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로 나뉨 특성화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제91조(특성화 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하여 일반학교와 다른 교육과정(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위탁교육기관으로 원래 다니던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두고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소속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비인가형 대안학교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요건에 맞지 않거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감에게 인가를 받지 않은(못한) 교육기관		-

출처: 이학춘·심대현, 2017,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25(4): 206~208.

■ 인가형 대안학교의 주요 요건

- 인가형 대안학교의 주요 요건으로는 교육과정, 교사 자격과 교직원 배치, 시설과 설비를 들 수 있음
- 교육과정은 대안학교가 자율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되, 의무적인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교육과정으로 국어 및 사회(중등과정의 국사, 역사교과 포함)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50% 이상을 운영해야 함

10) 각종학교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하며, 각종학교는 학교 이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

[표 2-5]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원의 자격)에 따라 교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정교사 1급, 2급, 준교사 등)을 교사 자격 요건으로 정함¹¹⁾
- 교사배치는 최소한의 교사 수를 배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2항)([표 2-6] 참조)

[표 2-6] 인가형 대안학교 교사배치 기준(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학교 과정	배치 기준
초등학교 과정	· 학급마다 교사 1명 배치(교장·교감 포함)
중·고등학교 과정	· 3학급까지 학급마다 교사 2명(교장·교감 외) · 3학급 초과 시 1학급이 늘어날 때마다 교사 1명씩 더 배치

주: 1.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경우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음
 2. 산학겸임교사: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임용 가능
 3. 초등학교 과정 인가 설립 시 교육감은 소재 지역과 교육대상을 고려해 필요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치기준 완화 가능

- 시설·설비는 교사(校舍) 기준 면적과 옥외 체육장 기준 면적을 구비해야함(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 교사 기준 면적은 초등학교 과정은 3.3㎡ 중·고등학교 과정은 7㎡임([표 2-7] 참조)
- 옥외 체육장 기준 면적은 초등학교 과정 중 120명 미만은 1,500㎡, 중·고등학교 과정 중 60명 이하는 2,000㎡임([표 2-8] 참조)
-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① 새로 설립되는 대안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

11) 교원 자격 기준 세부내용은 「초·중등교육법」 21조(교원의 자격) 2항 관련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 참고

하여 해당 대안학교의 학생 등이 쉽게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②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옥외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시설 설비 기준은 ①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 ② 배수가 잘 되는 옥외 체육장, ③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 ④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 ⑤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 시설과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임

[표 2-7] 인가형 대안학교 교사의 기준 면적

(단위: m²)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120명 이하	121명 이상
초등학교 과정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60명 이하	61명 이상
중학교 과정	7×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60명 이하	61명 이상
고등학교 과정	7×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60명 이하	61명 이상

- 주: 1.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 전 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출처: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교사의 기준 면적

[표 2-8] 인가형 대안학교 옥외체육장의 기준 면적

(단위: m²)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120명 이하	121명 이상
초등학교 과정	1,500	1,350+0.5×총학생정원
	60명 이하	61명 이상
중학교 과정	2,000	2,025+0.5×총학생정원
	60명 이하	61명 이상
고등학교 과정	2,000	2,325+0.5×총학생정원
	60명 이하	61명 이상

- 주: 1.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 전 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총학생정원을 최상급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아 적용한다.

출처: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 옥외체육장 기준 면적

3) 비인가 대안학교 법제화 추진 현황

■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는 불법 운영에 해당

- 2009년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안학교 인가 기준을 완화하였지만, 여전히 다수의 대안학교가 비인가 형태로 운영 중임
- 비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와 제67조(벌칙)에 따르면 불법시설에 해당함
 -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4조),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7조)¹²⁾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화 진행

- 비인가 대안학교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이를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는 공교육 수준의 지원기회를 박탈당하고, 국가차원에서 보건위생, 시설안전 관리 등에 기본적인 공적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학춘·심대현, 2017: 206)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비인가 대안학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때문에 제도권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일부 국회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근거로 관련 법안을 발의함(표 2-9) 참조
 - 하지만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¹³⁾

¹²⁾ 이 조항에 따라 실형이 내려진 사례는 없었지만, 몇몇 대안교육 현장이 고발당하는 일은 있었음(한겨레, 2018. 10. 24., “‘비인가 대안학교’는 처벌받아야 하는가?”, 정대하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7098.html>

¹³⁾ 2019년 11월 7일 기준

[표 2-9]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비고
대안교육진흥법안	김병욱 의원	2017.9.1.	대안 반영 폐기
대안교육기관 지원 법안	김세연 의원	2017.12.8.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박찬대 의원	2018.10.3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위원회대안)	2019.6.26.	법사위 계류

- 이러한 법안 발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학의무 유예 및 학력인정,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수업료 회계공개 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¹⁴⁾

[표 2-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대안)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의무
제11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임의
제5조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의 등록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 의무
제10조	취학의무 유예	-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의무 유예 가능 임의
제12조	학력인정	- 교육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임의
제16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함 의무
제17조	수업료 등	-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수납가능 - 금액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임의
제18조	회계운영	- 예산안 및 결산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

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구분

14)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2019.6.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대안)”(임시번호DD01406).

3_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업

1)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업

-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확보하려고 2001년 ‘서울시대안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민간 현장과 수련관 시설을 활용한 8개의 대안학교 지원사업을 시작함(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4:40)
 - 2018년 기준 서울시가 지원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44개로, 2001년 사업초기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임.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 수도 167명에서 1,000여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함¹⁵⁾
- 2012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 수립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체계가 본격적으로 마련
 - 2012년 해당 조례에 따라 ‘서울시대안교육센터’를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대안학교에서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서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은 청소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함
 - 이외에도 2014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개발원이 총괄하는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을 운영 중임
- 동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맞춤형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해당 계획 예산은 약 91억 원으로 이 중 38억 원은 기관운영비로 사용(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6억 원, 청소년지원센터 32억 원)
 -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35억 원, 급식비 지원으로 8억 원 등 43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음([표 2-11] 참조)

15) 서울시 평생교육국, 2019. 1.,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붙임1] 서울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현황(44개소)”.

[표 2-11]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예산(안)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총계	9,13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4,965	시비 10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601	
비인가 대안학교 인건비, 사업비 지원	3,510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854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3,237	국비 50% 시비 50%
서울시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1개소	334	
자치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24개소	2,903	
인턴십, 학습지원비 지원 등 맞춤형 사업	736	시비 100%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200	시비 100%

출처: 서울시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 2019.1.,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1)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지원

■ 비인가 대안학교에 인건비,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를 공모·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대안학교 형태를 도시형 대안학교와 징검다리 거점공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 도시형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처럼 전일제 운영을 하는 곳으로 주로 정규교육과는 다른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선택한 청소년이 주를 이룸¹⁶⁾
 -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학습 연계망의 거점이 되는 공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임
 - 정규학교를 나왔지만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학교 밖의 진로를 위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학습, 체험, 진로 프로그램, 검정고시 준비 등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임

¹⁶⁾ 탈북아동과 탈북민 자녀, 은둔형청소년, 미혼모, 위기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학생의 사회적 환경이나 특성에 맞춰 운영되는 곳도 있음.

- 2018년 기준 서울시는 44개소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표 2-12] 참조)
- 도시형 대안학교 31개소, 징검다리 거점공간 13개소가 서울시 지원을 받음
 - 도시형 대안학교는 꿈틀학교, 푸른나무 미디어학교, 아름다운 학교 등 총 31개소
 -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1318상상발전소, 틱움, 도깨비 등 총 13개소

[표 2-12] 서울시 지원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44개소)

2018년 기준

연번	기관명	수탁기관	대상	학생 수	수업료
1	꿈틀학교	(사)청소년내길찾기	16세~19세	16명	학기당 100만 원
2	푸른나무미디어학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15세~19세	8명	학기당 90만 원
3	아름다운학교	사회적협동조합함께시작	14세~24세	39명	월 45만 원
4	꿈지락학교	(사)한국청소년연맹	14세~24세	15명	연 30만 원
5	틱움터학교	망우청소년수련관	14세~20세	10명	월 15만 원
6	공간민들레	민들레(비)	14세~19세	24명	연 420만 원
7	인디학교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13세~23세	15명	무료 (입학금 3만 원)
8	자오나학교	(재)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14세~20세	8명	무료
9	삼각산 재미난학교	(사)삼각산재미난마을	8세~13세	47명	월 50만 원
10	동방학교	충만교회	12세~24세	11명	무료
11	은평 씨앗학교	청소년대안공간 돌움	13세~15세	12명	월 25만 원
12	영세프스쿨	오가니제이션요리	17세~22세	10명	연 40만 원
13	하자작업장학교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15세~24세	15명	학기당 110만 원
14	꽃피는학교	(사)청소년명화꽃네트워크	16세~17세	27명	월 54만 원
15	성미산학교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8세~16세	107명	월 62.9천원
16	내일새싹학교	내일교육커뮤니티	8세~16세	20명	월 47만 원 (입학금 600만 원)
17	돈보스코 영상특성화학교	(비)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14세~24세	5명	월 30만 원
18	꿈이 있는 학교	회원종합사회복지관	14세~19세	13명	월 15만 원
19	원두학교	금천청소년수련관	16세~24세	9명	월 15만 원
20	사람사랑나눔학교	(재)청소년과사람사랑	19세~24세	16명	월 20만 원
21	로드스폴라	로드스폴라	16세~22세	46명	학기당 240만 원 여행경비별도
22	꿈이룸학교	(사)사랑의힘	17세~21세	19명	연 400만 원
23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사)청소년의꿈	14세~21세	12명	월 35만 원
24	성장학교 별	(사)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	14세~20세	41명	월 50만 원 (입학금 200만 원)

[표 2-12(계속)] 서울시 지원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44개소)

2018년 기준

연번	기관명	수탁기관	대상	학생 수	수업료
25	우리들학교	우리들학교	10세~30세	47명	월 20만 원
26	다음학교	(사)느헤미야코리아	14세~24세	55명	월 5만 원
27	이룸학교	시립청소년드림센터	13세~24세	14명	무료
28	단재학교	(비)교육공동체단재	14세~19세	13명	월 50만 원
29	대안학교 한들	송파청소년수련관	14세~19세	10명	학기당 60만 원
30	사랑의 학교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14세~20세	10명	월 20만 원
31	꿈터학교	꿈터청소년 대안공동체	14세~16세	13명	월 30만 원
32	1318 상상발전소	1318 상상발전소	13세~24세	11명	무료
33	티움	(사)청소년내길찾기	15세~20세	28명	무료
34	도깨비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	14세~24세	17명	무료
35	스쿨 제프	교육공동 체제프	16세~20세	30명	월 20만 원
36	나도,꽃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14세~24세	41명	무료
37	와락	노원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9세~24세	20명	월 10만 원
38	작공	청소년도서관 작공	9세~24세	21명	월 15만 원
39	주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14세~19세	5명	무료
40	꿈꾸는 다락방	꿈꾸는다락방	14세~24세	48명	월 30만 원
41	캔틴스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14세~24세	22명	연 500만 원
42	바라지	살레시오미래교육원	9세~24세	5명	월 20만 원
43	몽담몽담	(사)청소년의 꿈	13세~21세	18명	월 15만 원
44	하품	(사)인터넷꿈희망터	14세~19세	16명	월 5만 원 (입학금10만 원)

주: 연번 1~31 도시형 대안학교, 32~44 징검다리거점 공간

출처: 서울시, 2019. 1.,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붙임1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

- 2019년 5월 기준 서울시는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확대하여 43개¹⁷⁾ 기관에 인건비, 사업비, 급식비 등으로 기관별 평균 1억 원씩 총 43억 원을 지원함
 - 기관별로 교사 인건비로 2018년까지 1인 기준 월 200만 원씩 2인까지 지원하던 것을 교사 3인 인건비 연 7,200만 원으로 확대
 - 사업비도 기관별로 연 3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연 600만 원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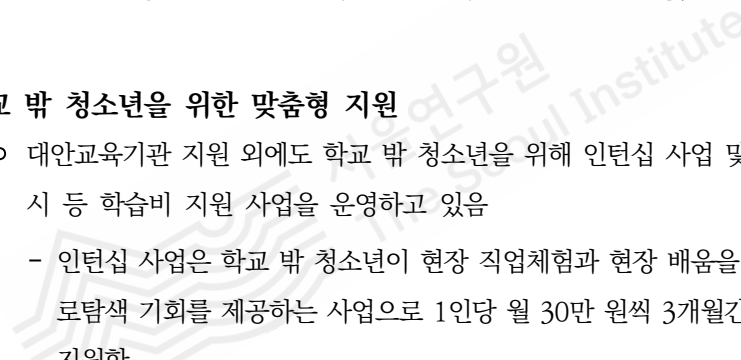
17) 2018년까지 44개 기관을 지원했지만 1개 기관(꿈지락학교)이 운영을 중단하여 2019년에는 43개 기관 지원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급식비 지원자 수를 2018년 244명에서 2019년 900명으로, 수업료 지원자 수도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함

[표 2-13]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내용

(2019년 기준, 단위: 천 원)

구분	연간 지원 총액	기관당 평균 지원액	세부내용
인건비	3,096,000	72,000	기관별 동일 지급 200만 원×3인×12개월
사업비	258,000	6,000	기관별 동일 지급 50만 원×12개월
급식비	973,800	22,640	기관별 상이 지급 총 950명 초등 3,268원*×150명×200일 중등 5,406원×800명×200일
합계	4,327,800	100,640	-

출처: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부자료, 2019. 9. 20, “대안교육기관 지원현황(2018~2019년)”.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 대안교육기관 지원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인턴십 사업 및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인턴십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장 직업체험과 현장 배움을 통해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연 2회 지원함
 -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은 개인적 환경으로 학업이 중단된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학업 및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00만 원 이내에서 학원비, 교재비 등을 지원
 - 대안교육기관 장학금 지원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험학습비, 교재비, 수업료 등으로 1인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

[표 2-14]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내용

(2019년 기준,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세부내용
인턴십	275,000	월 인당 300천 원*3개월*300명 운영비 홍보비 5,000천 원
학습비 지원	300,000	1000천 원*300명
대안교육기관 장학금 지원	150,000	1,500천 원*100명
합계	725,000	-

출처: 서울시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 2019. 1.,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2)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

(1)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2019. 9. 26.)

- 서울시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이 제정된 시기보다 2년 앞선 2012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칭하여 지원하고 있음
- 올해(2019년)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강화·확대할 목적으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중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분리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제정함(시행 2019. 9. 26.)
 - 이 조례의 목적은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제1조)
 - 주요내용으로 서울시는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제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운영(제5조), 3년마다 실태조사(제10조)를 할 수 있음
 -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서울시에 신고를 해야 하고(제6조),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제7조)

[표 2-15]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비고
제1조	목적	-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보장	-
제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수립·시행(매년)	의무
제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 대안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설치·운영	임의
제6조	신고제 도입	- 서울지역 소재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함 -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운영할 경우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음	의무
제7조	지원	-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등	임의
제9조	실태조사	- 3년마다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 실행	임의

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구분

(2)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 기존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춰 강화·확대하여 시 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기능을 강화함(2019. 8. 26. 전부 개정)
 - 제6조 상담지원, 제7조 학업지원, 제8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9조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조항을 구체화하여 신설
 - 학교 밖 청소년지원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개발원이 총괄하는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¹⁸⁾기능을 강화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에 따라 대안교육사업을 전담하는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를 별도 운영

3)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과 추진 현황

- 서울시는 '2019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2019. 1.)'에서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

¹⁸⁾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서울지역에 서울시센터 1개와 자치구센터 24개가 운영 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자립, 건강검진 등을 지원.

(2019. 6.)을 수립함

- 서울시는 제도권이 아닌 다른 틀의 교육이나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계획을 발표
 - 서울형 대안학교를 육성해 대안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 목표로 설정
 - 2020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개소를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운영할 계획임
- 같은 해 6월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운영 방안, 지원방안,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을 수립
 - 이 계획에서는 서울형 대안학교 개념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창의성이 보장되고 서울시가 인정한 대안학교'로 정의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방안은 교사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기관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짐
 - 교사 인건비는 1인 연 3,000만 원으로 학교별로 3인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재학생 수와 연동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세움
 - 안정적 운영기반조성을 위해 학교별 임대료의 80%를 지원하되 상한액을 정하여 운영
 - 운영비는 학교 운영비의 80%를 지원하고, 교과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비로 학교당 1,200만 원 지원 계획을 수립함

[표 2-16] 서울시 지원 대안교육기관과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시 지원 내용 비교
(1개 기관 연간 지원액 기준)

구분	서울시 지원 대안교육기관	서울형 대안학교
인건비	72백만 원	90~150백만 원
사업비	6백만 원	36~540백만 원
급식비	22백만 원	22백만 원
임대료	-	24백만 원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2019. 12.)

- 대안학교 신고제는 대안학교 지원 관련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비인가 시설 논란 예방을 위해 추진
 - 계획안에 따르면, 대안학교 신고의 실제적 요건으로 대안교육사업 2년 이상 운영, 재학생 5명 이상, 상근교사 2명 이상, 시설규모가 학생 1인당 7㎡ 이상 등의 조건을 확보해야 함
 - 신고절차는 해당기관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련서류 확인 후 현장실사를 통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방식
- 서울시가 기존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업에서 신고제를 신설하고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을 도입한 이유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소극적 지원에서 적극적 지원과 질 관리를 위한 것임
 - 기존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학교에 일정정도의 지원금을 분배하는 방식이었음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은 공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간 교육환경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단순지원을 넘어서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질 관리 의지를 표명한 것임
 - 또한 비인가 대안학교 신고제를 신설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서울 소재 대안교육기관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03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분석



- 1_기본 현황
- 2_인력 현황
- 3_이용자 현황
- 4_시설 현황

03.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분석

1_기본 현황

1)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유형

■ 비인가 대안학교는 운영방식에 따라 전일제형과 공간형으로 구분

- 전일제형은 일반학교와 유사한 형태의 학기제와 전일제로 운영하며, 자체적인 대안교육과정으로 운영함
 - 전일제형은 대안적 진로 모색을 목적으로 하거나 공교육 체제에 부적응한 학생들이 많은 편이고, 공간형보다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비싸 중산층 가정의 청소년이 많음
 - 북한이탈주민 및 제3국 출생자녀, 위기청소년, 학습 및 발달장애 청소년 등 청소년 특성에 맞춰 운영되는 곳도 존재
- 공간형은 프로그램 및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진압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임
 - 전일제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문제, 가정문제 등 사회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많음
 - 지속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필요에 따라 잠시 공간을 이용하는 청소년 등 이용방식이 다양함
- 전일제형과 공간형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음

[표 3-1]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유형별 특성

구분	전일제형 (도시형 대안학교)	공간형 (징검다리 거점공간)
목적	학습 및 진학 중심	학습 및 진로 중심
운영방식	일반학교 형태의 학기제 운영	공간 중심의 상시운영
교육과정	자체적인 대안교육과정	중·단기 프로그램, 상담중심
주요대상	대안교육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경제, 가정 등 사회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초·중고 학령기 이후 후기청소년
대표사례	성미산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 돈보스코영상학교 등	꿈꾸는 다락방학교, 창창한작업장학교, 문화놀이터 와플 등

- 현황 조사에 응답한 59개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를 운영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일제형은 42개소(71.2%), 공간형은 17개소(28.8%)임

[표 3-2]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유형별 현황

구분		개소	비율(%)
유형	전일제형	42	71.2
	공간형	17	28.8
합계		59	100

2) 기본 운영 현황

■ 운영단체 유형

-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단체 유형을 살펴보면 ‘비영리민간 단체’가 20개소(33.9%)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사단법인 14개소(23.7%), 재단법인 8개소(13.6%) 순이었음([표 3-3] 참조)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5곳으로 송파청소년 수련관(대안학교 한들), 서울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하자작업장학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이룸학교), 서울시립망우청소년센터(트윅터학교), 노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우(징검다리 거점공간 와락) 등이 있음

■ 운영기간

- 운영기간은 ‘6~10년’이 22개소로 가장 많았고, 1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곳도 27개소나 됨([표 3-3] 참조)

- 전일제형은 '11년 이상'인 곳이 24개소로 절반 이상(57.1%)을 차지하였고, 공간형은 '6~10년'인 곳이 10개소(58.8%)로 가장 많았음
- 전일제형 중 가장 오래된 곳은 2001년에 설립된 사랑의학교, 은평씨앗학교, 돈보스코영상학교, 공간민들레 등 7개소임

■ 모집대상

- 모집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외에도 정규학교를 다니고 있는 일반청소년도 함께 받고 있는 곳이 39%(23개소)임([표 3-3] 참조)
- 특히 공간형은 모집대상에 일반청소년이 포함된 곳은 70.6%(12개소)로 전일제형(26.2%)보다 2.7배가량 높음
- 공간형은 동아리 활동 등 단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과 어울리는 일반청소년도 함께 공간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음.
- 모집대상을 학교급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령기가 각 51개소로 8개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령기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표 3-3] 참조)
- 전일제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령기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 각 36개소(85.7%)이고, 초등학교 학령기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14개소(33.3%)임
- 공간형은 초등학교 학령기를 받는 곳은 17개소 중 단 1곳뿐이고,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16개소(94.1%)에 달함
-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은 이유는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방황을 하다가 사회로 진입할 19세 이상 나이가 되면서 직업 및 진로탐색을 목적으로 공간형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전일제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자체 통합교육 과정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함([표 3-3] 참조)
- 전일제형 42개소 중 중·고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22개소, 초·중·고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10개소임

[표 3-3]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전일제형		공간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운영단체 유형	공공기관	5	8.5	4	9.5	1	5.9
	재단법인	8	13.6	7	16.7	1	5.9
	사단법인	14	23.7	9	21.4	5	29.4
	협동조합	2	3.4	1	2.4	1	5.9
	비영리민간단체	20	33.9	12	28.6	8	47.1
	비등록단체	4	6.8	4	9.5	0	0.0
	종교단체	3	5.1	3	7.1	0	0.0
	기타	3	5.1	2	4.8	1	5.9
	계	59	100	42	100	17	100
운영기간	1~5년	10	16.9	6	14.3	4	23.5
	6~10년	22	37.3	12	28.6	10	58.8
	11~15년	13	22.0	10	23.8	3	17.6
	16~20년	14	23.7	14	33.3	0	0.0
	계	59	100	42	100	17	100
모집대상 (1) 학교밖청소년 유무	학교 밖 청소년	36	61.0	31	73.8	5	29.4
	학교 밖 청소년 +일반청소년	23	39.0	11	26.2	12	70.6
	계	59	100	42	100	17	100
모집대상 (2) 학교급 기준 *중복표기	초등학교	15	25.4	14	33.3	1	5.9
	중학교	51	86.4	36	85.7	15	88.2
	고등학교	51	86.4	36	85.7	15	88.2
	후기청소년	30	50.8	14	33.3	16	94.1
	계	147	-	100	-	47	-
운영과정	초등학교 과정			2	4.8		
	중학교 과정			2	4.8		
	고등학교 과정			4	9.5		
	초중통합과정			2	4.8		
	초중고통합과정			10	23.8		
	중고통합과정			22	52.4		
	계			42	100		

주: 모집대상(2)(학교급 기준)은 통합과정을 운영할 경우 중복 표기함. 비율은 전체 59개소를 기준으로 학교급별 운영 비율로 표기

- 모집대상 중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은둔형청소년, 청각 및 발달장애, 양육미혼모 등 특수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도 있음([표 3-4] 참조)
- 이외에도 공간형 대안학교 중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곳도 많음

[표 3-4] 특정 대상 비인가 대안학교

구분	학교 수	학교명
북한일탈주민 및 제3국 출생자녀	4	우리들학교, 다음학교, 남북사랑학교, 금강학교
건강문제 및 장애	4	사람사랑나눔학교(발달지연장애),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청각장애), 캔틴스쿨(소아암건강장애), 사랑의학교(은둔형청소년)
청소년양육미혼모	1	자오나학교

2_인력 현황

1) 인력규모

- 59개소 비인가 대안학교에 근무하는 상근교사는 총 291명이고 기관별 평균 4.9명임([표 3-5] 참조)
 - 전일제형은 '4명~6명'이 19개소(45.2%)로 가장 많았고, 공간형은 '1명~3명'이 15개소(88.2%)로 가장 많았음([표 3-6] 참조)
 - 상근교사가 10명 이상인 기관은 이야기학교(10명), 숲나-플레10년(13명), 성미산학교(23명) 등 3곳임
- 59개소 전체 유급강사(비상근 교사 포함) 수는 총 516명, 기관별 평균 8.8명이고, 무급강사 수는 총 208명, 기관별 평균 4.4명임
- 59개소 중 별도 행정인력이 있는 곳 22개소(37.3%), 급식 전담인력이 있는 곳은 19개소(32.2%)에 불과하여, 상근교사 및 강사가 행정 및 급식관련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행정 및 급식 전담인력이 있는 곳이 전일제형은 17~20개소(40% 내외)인 반면, 공간형은 2개소(11%)임

[표 3-5] 비인가 대안학교 상근교사 및 강사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전일제형		공간형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상근교사 수	291	4.9	242	5.8	49	2.9
유급강사 수	516	8.8	409	9.7	107	6.3
무급강사 수	208	4.4	133	3.2	75	3.5

[표 3-6] 비인가 대안학교 인력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전일제형		공간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상근교사 구간별 빈도	1명~3명	25	42.4	10	23.8	15	88.2
	4명~6명	21	35.6	19	45.2	2	11.8
	7명~9명	10	16.9	10	23.8	0	0.0
	10명 이상	3	5.1	3	7.1	0	0.0
	계	59	100	42	100	17	100
행정인력 유무 (비상근 포함)	있음	22	37.3	20	47.6	2	11.8
	없음	37	62.7	22	52.4	15	88.2
	계	46	78	29	69	17	100
급식인력 유무 (비상근 포함)	있음	19	32.2	17	40.5	2	11.8
	없음	40	67.8	25	59.5	15	88.2
	계	62	105.1	45	107.1	17	100

2) 근무 여건

- 상근교사 급여 지급 방법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 지급은 전일제형은 35개소(83.3%), 공간형은 8개소(47.1%)임
-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급여를 동일 지급 하는 곳의 급여는 월 190만 원 내외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차등 지급의 최저 급여 평균과 비슷함¹⁹⁾
- 상근교사 근속연수는 4.7년으로 근속 기간이 짧은 편이고, 공간형은 3.2년으로 전일제형 5.3년보다 2년가량 더 짧았음

19) 2019년 최저임금은 1,795,310원,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2,120,932원

[표 3-7] 비인가 대안학교 상근교사 급여 지급 방법 및 월 급여

구분			전체	전일제형	공간형
차등 지급 기관 수 (%)			43개소 (72.9%)	35개소 (83.3%)	8개소 (47.1%)
상근교사 급여 (4대 보험 포함)	동일급여 평균		190만 원	195만 원	186만 원
	차등 급여 평균	최저액	189만 원	189만 원	186만 원
		최고액	272만 원	278만 원	244만 원
상근교사 평균 근속연수			4.7년	5.3년	3.2년

3) 교사 자격증 소지 현황

- 상근교사 291명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106명(36.4%)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도 각각 55명(18.9%), 54명(18.6%) 임([표 3-8] 참조)
- 기관 기준으로는 59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국가자격증 보유자를 1명 이상은 고용하고 있음
 - 전일제형은 교원자격증 소지자 고용기관이 36개소(85.7%)로 가장 많았고, 공간형은 청소년지도사와 사회복지사 소지자 고용기관이 각 13개소(76.5%)로 가장 많았음

[표 3-8] 상근교사 자격증 소지비율

(단위: 명, 개소, %)

구분		전체		전일제형		공간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상근교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 (n=291명)	교원자격증	106	36.4	96	39.7	10	20.4
	청소년지도사	54	18.6	32	13.2	22	44.9
	청소년상담사	17	5.8	11	4.5	6	12.2
	사회복지사	55	18.9	28	11.6	27	55.1
	평생교육사	11	3.8	5	2.1	6	12.2
상근교사 자격증 소지자 고용 기관 비율 (n=59개소)	교원자격증	45	76.3	36	85.7	9	52.9
	청소년지도사	31	52.5	18	42.9	13	76.5
	청소년상담사	13	22.0	9	21.4	4	23.5
	사회복지사	31	52.5	18	42.9	13	76.5
	평생교육사	10	16.9	5	11.9	5	29.4

3_이용자 현황

1) 이용자 규모

- 2018년 기준 서울시 소재 59개 비인가 대안학교 이용자 수는 총 1,973명이고, 기관별 이용자 수 평균은 33.4명임([표 3-9] 참조)
 - 기관별 이용자 수는 최소 3명부터 최대 192명까지 편차가 크고, '1~20명' 규모가 29개소로 절반가량(49.2%)을 차지함([표 3-11] 참조)
 - 전일제형 중 학생 수가 61명 이상인 학교는 숲나-플레 10년(62명), 성미산학교(104명), 다음학교(106명), 벤자민인성영재학교(192명) 등 4곳임
-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일제형 이용자 수는 총 1,212명, 평균 28.8명이고, 공간형은 총 761명, 평균 44.8명임([표 3-9] 참조)
 - 전일제형 이용자 수를 교육과정별로 보면 중고등과정이 784명(64.7%)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초등과정 285명(23.5%), 후기청소년과정 143명(11.8%) 순임([표 3-10] 참조)
 - 공간형 이용자 중 단기 공간 이용자 수는 연간 총 6,315명으로 기관당 평균 371.5명임([표 3-9] 참조)
-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4명이고, 유형별로는 전일제형 4.9명, 공간형 17.1명임([표 3-11] 참조)
 -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일제형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5명 이하'인 곳이 33개소로 78.6%에 달함
 - 일반학교보다 수치가 적은 이유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임
 - 장애(건강장애 포함), 위기청소년, 탈북청소년 등 특수 상황으로 일반학생보다 교사 품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음

[표 3-9] 비인가 대안학교 이용자 수

(2018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전일제형		공간형	
	총원	평균	총원	평균	총원	평균
이용자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1,973	33.4	1,212	28.8	761	44.8
공간 이용자수					6,315	371.5
교사 1인당 학생 수		8.4		4.9		17.1

주: 1. 공간형은 이용자 수를 연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인원으로 기입함. 한 명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1명으로 계산

2. 교사 1인당 학생 수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 수 기준으로 계산

[표 3-10] 전일제형 비인가 대안학교 급별 이용자 수

(단위: 명, 개소, %)

구분	전체 학생 수		기관당 평균 학생 수	
	학생 수	비율	기관 수	학생 수
초등학교 과정	285	23.5	14	20.4
중학교 과정	259	21.4	36	7.2
고등학교 과정	525	43.3	36	14.6
후기청소년 과정	143	11.8	14	10.2
계	1,212	100.0	-	-

[표 3-11] 비인가 대안학교 이용자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구간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전일제형		공간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용자 수	1~20명	29	49.2	26	61.9	3	17.6
	21~40명	14	23.7	7	16.7	7	41.2
	41~60명	8	13.6	5	11.9	3	17.6
	61~80명	2	3.4	1	2.4	1	5.9
	81명 이상	6	10.2	3	7.1	3	17.6
	계	59	100	42	100	17	100
교사 1인당 학생 수	5명 이하	35	59.3	33	78.6	2	11.8
	6~10명	11	18.6	6	14.3	5	29.4
	11~15명	6	10.2	2	4.8	4	23.5
	16~20명	2	3.4	0	0.0	2	11.8
	21명 이상	5	8.5	1	2.4	4	23.5
	계	59	100	83	100	17	100

2) 이용자 부담금

- 비인가 대안학교 중 전일제형은 인건비, 임대료 등 학교 운영비용을 이용자 부담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전일제형 중 수업료가 있는 곳은 36개소(85.7%)이고, 월 평균 38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음([표 3-12] 참조)
 - 수업료가 50만 원 이상인 곳도 13개소(30.9%)나 있는 것으로 확인됨([표 3-13] 참조)
 - 서울시 지원을 받는 학교 중 로즈스폴라(52.5만 원), 성미산학교(73만 원), 동방학교(50만 원), 단재학교(50만 원) 등이 해당됨
 - 전일제형 중 입학금을 받는 곳도 19개소(45.2%)이고 입학금 평균은 141만 원임([표 3-12] 참조)
 - 입학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공간형은 전체 17개소 중 4개소만 수업료를 받고 운영하며 수업료 평균은 17만 원으로 전일제형의 절반 수준임([표 3-12] 참조)
 - 입학금을 받는 곳은 1곳으로 5만 원을 받고 있음

[표 3-12] 비인가 대안학교 이용료(수업료·입학금·급식비) 부과 기관

(단위: 개소, 만 원)

구분	전체 (N=59)		전일제형 (N=42)		공간형 (N=17)	
	기관 수	평균액 (최소~최대)	기관 수	평균액 (최소~최대)	기관 수	평균액 (최소~최대)
수업료	40	36(3~90)	36	38(5~90)	4	17(3~30)
입학금	20	134(3~600)	19	141(3~600)	0	-
급식비	13	14(0.4~30)	13	14(0.4~30)	0	-

[표 3-13] 비인가 대안학교 수업료 구간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전일제형		공간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업료 없음	19	32.2	6	14.3	13	76.5
10만 원 미만	2	3.4	1	2.4	1	5.9
10만 원~20만 원 미만	5	8.5	4	9.5	1	5.9
20만 원~30만 원 미만	9	15.3	8	19.0	1	5.9
30만 원~40만 원 미만	8	13.6	7	16.7	1	5.9
40만 원~50만 원 미만	3	5.1	3	7.1	0	0.0
50만 원~60만 원 미만	8	13.6	8	19.0	0	0.0
60만 원 이상	5	8.5	5	11.9	0	0.0
합계	59	100.0	42	100.0	17	100.0

4_시설 현황

- 59개소 중 시설을 소유한 곳이 12개소(20.3%)이고, 임대가 47개소(79.7%)임([표 3-14] 참조)
 - 월세가 32개소(54.2%)로 가장 많고, 무상임대는 14개소(23.7%)를 차지함
 -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돈보스코영상학교, 자오나학교, 대안학교 한들, 성미산학교 등 총 12개소임
 -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하자작업장학교, 영세프스쿨, 푸른나무미디어학교, 이룸학교 등 총 14개임
- 기관별 평균 임차보증금은 4,969만 원이고 월 평균 임대료는 342만 원임([표 3-15] 참조)
 - 월 임대료는 최소 7만 3천 원부터 1천 3백만 원까지 편차가 커, 중앙값과 상위값을 제외한 평균으로 확인
 - 월 임대료 중앙값은 전체 186만 원이고, 상위값을 제외한 평균은 221만 원임²⁰⁾

20) 평균 금액은 801만 원 이상을 제외한 금액임.

- 전일제형 중앙값은 240만 원, 공간형은 136만 원으로 104만 원가량 차이가 남
-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일제형은 ‘101만 원~200만 원’이 8개소(34.8%)로 가장 많고, 공간형은 ‘100만 원’ 이하가 5개소(55.6%)로 가장 많음
- 인가형 대안학교 시설 최소면적 기준은 초등학교는 인당 3.3㎡ 이상으로, 중·고등학교는 인당 7㎡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건물 면적이 1인당 ‘3.3㎡ 미만’인 곳은 10개소(전일제형 2개소, 공간형 8개소)이고, ‘7㎡ 미만’인 곳은 17개소(전일제형 5개소, 공간형 12개소)임([표 3-14] 참조)
 - 공간형은 연간 프로그램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인당 면적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면적이 과소 추정된 측면이 있음
 - 또한 59개 기관 중 32개소(54.2%)는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용면적의 경계가 애매하여 과도하게 넓거나 좁게 측정된 측면이 있음([표 3-16] 참조)

[표 3-14]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전일제형		공간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유현황 및 임대방식	소유		12	20.3	10	23.8	2	11.8
	임대	전세	1	1.7	1	2.4	0	0.0
		월세	32	54.2	23	54.8	9	52.9
		무상	14	23.7	8	19.0	6	35.3
	계		59	100	42	100	17	100
월 임대료 구간별 (N=32)	100만 원 이하		8	25.0	3	13.0	5	55.6
	101만 원~200만 원		11	34.4	8	34.8	3	33.3
	201만 원~300만 원		3	9.4	3	13.0	0	0.0
	301만 원~400만 원		3	9.4	2	8.7	1	11.1
	401만 원~800만 원		3	9.4	3	13.0	0	0.0
	801만 원 이상		4	12.5	4	17.4	0	0.0
	계		32	100.0	23	100.0	9	100.0
학생 인당 시설면적	3.3㎡ 미만		10	17.2	2	4.9	8	47.1
	3.3㎡ 이상 7㎡ 미만		7	12.1	3	7.3	4	23.5
	7㎡ 이상 10㎡ 미만		5	8.6	3	7.3	2	11.8
	10㎡ 이상 20㎡ 미만		17	29.3	17	41.5	0	0
	20㎡ 이상		19	32.8	16	39.0	3	17.6
	계		58	100	41	100	17	100

[표 3-15] 비인가 대안학교 임차비용 및 시설면적 평균

(단위: 만 원, m²)

구분		전체	전일제형	공간형
임차 비용	전세보증금	10,000	10,000	-
	월세보증금	4,969	5,652	3,222
	월 임대료	평균	342	423
		중앙값	186	240
		상위값(801만 원 이상) 제외한 월임대료 평균	221	262
시설 면적	시설 총면적	563.9	631.6	400.7
	학생 1인당 시설면적	16.8	21.9	8.9

주: 학생 1인당 시설면적 = 시설 총면적 평균/이용자 수 평균

[표 3-16]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사용 방식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전일제형		공간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단독사용	27	45.8	18	42.9	9	52.9
공동사용(일부)	21	35.6	15	35.7	6	35.3
공동사용(전체)	11	18.6	9	21.4	2	11.8
계	59	100	42	100	17	100

- 시설 유형별로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5개소뿐이고,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26개소(44.1%)임([표 3-16] 참조)
 - 59개소 중 절반가량은 별도 체육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 급식을 위한 조리시설을 보유한 곳은 45개소(76.3%), 식사 공간을 보유한 곳은 38개소(64.4%)임
 - 사무 공간과 일반교실은 2개소를 제외한 57개소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특별활동실은 38개소(64.4%)가 보유하고 있음

[표 3-17] 시설 보유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전일제형		공간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무 공간	57	96.6	41	97.6	16	94.1
일반교실	57	96.6	40	95.2	17	100.0
특별활동실	38	64.4	27	64.3	11	64.7
조리시설	45	76.3	33	78.6	12	70.6
식사 공간(교실 외 별도 공간)	38	64.4	29	69.0	9	52.9
운동장	5	8.5	5	11.9	0	0.0
강당	26	44.1	23	54.8	3	17.6

주: 1. 일반교실: 책상, 의자 등 최소한의 교육시설이 구비된 공간. 다목적실을 교실로 사용할 경우
 2. 특별활동실: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등 특별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실



04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과 지정 관련 의견조사 분석

1_조사개요

2_설문조사 결과 분석

3_FGI 결과 분석

4_소결과 시사점

04.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과 지정 관련 의견조사 분석

1_조사개요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총 71개 비인가 대안학교 중 미참여 의사를 밝힌 1개 기관을 제외한 70개 기관 교사와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 조사 방법

-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구축하였고, 기관별 담당자가 교사와 행정 담당 직원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 주소를 재전달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조사 기간

- 2019년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함

■ 설문 회수

- 설문 참여를 요청한 70개 기관 중 33개 기관에서 총 155명에게 배포하였고 이 중 142명이 응답함

2) 조사 내용

- 설문조사 주요내용은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인지도 및 지향점, 지정 기준, 정책 방향 등으로 구성함

[표 4-1]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정책인지도 및 지향점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인지 여부, 정의, 정책 지향점, 중시해야 할 목표
지정 기준	지정 기준 필요 여부, 지정 기준 근거, 지정 기준 항목별 필요성, 항목별 세부 기준(인력, 시설, 교육과정)
정책 방향	지정 기간, 수업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필요 사업 등

3) FGI 개요

-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및 지정 기준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 및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함
- FGI는 2019년 6월부터 7월 초까지 총 4차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함
 - FGI 간담회는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 유형(전일제형/공간형), 규모(학생 수), 서울시 지원 여부, 지역 등을 기준으로 나눠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관계자의 기관은 다음과 같음([표 4-2] 참조)

[표 4-2] FGI 간담회 개최 현황

차수	구분	관계자 참여기관	지원 여부
제1차	징검다리 거점공간	몽담몽담, 작공, 캔틴스쿨, 스쿨제프, 바라지	지원
제2차	대규모 도시형 대안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 아름다운학교, 우리들학교, 공간민들레	지원
제3차	소규모 도시형 대안학교	은평씨앗학교, 인디학교, 꿈틀학교, 내일새싹학교, 사랑의학교	지원
제4차	서울시 미지원 대안학교	이야기학교, 숲나플레10년학교, 인투비전학교, 창창한작업장학교	미지원

- FGI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으로 교사 자격, 교육과정, 시설, 모집 대상, 수업료 등의 기준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함

2_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 인지와 개념, 지향 인식

(1) 지정 정책 인지 여부

- 비인가 대안학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로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을 알고 있는(76.7%)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표 4-3] 참조)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에 관한 현장의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현장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 필요

[표 4-3]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세히 알고 있다.	30	21.1
조금 알고 있다.	79	55.6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	27	19.0
들어 본 적이 없다.	6	4.2
합계	142	100.0

(2) 지향점 및 중점 목표

- 서울형 대안학교의 지향점 1순위는 '자율성 신장'(30.3%) > 존엄성 존중(22.5%) > 개별성 존중(19.7%) 순
 - 2순위로는 1/3 이상(32.4%)이 '개별성 존중'을 선택함

[표 4-4] '서울형 대안학교' 지향점 우선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존엄성 존중	32	22.5	17	12.0	49	17.3
자율성 신장	43	30.3	33	23.2	76	26.8
개별성 존중	28	19.7	46	32.4	74	26.1
돌봄과 배려 추구	14	9.9	15	10.6	29	10.2
공동체 지향	12	8.5	15	10.6	27	9.5
조화와 통합 추구	13	9.2	16	11.3	29	10.2
합계	142	100.0	142	100.0	284	100.0

- 서울형 대안학교가 중시해야 할 목표 1순위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체험교육을 통해 자발성을 신장한다'(62%)가 가장 많았으며, 대안교육에서 중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상통
 - 2순위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으로 민주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한다'(37.3%)로 나타남

[표 4-5] '서울형 대안학교'가 중시해야 할 목표 우선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체험교육을 통해 자발성을 신장한다	88	62.0	28	19.7	116	40.8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이해 및 일원으로서 자질을 함양한다	12	8.5	30	21.1	42	14.8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으로 민주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한다	25	17.6	53	37.3	78	27.5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으로 미래의 진로개척능력을 함양한다	17	12.0	31	21.8	48	16.9
합계	142	100.0	142	100.0	284	100.0

2)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 필요와 준거

(1) 지정 기준 필요성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73.2%로 ‘불필요하다’는 응답(6.3%)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0.4%로 판단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됨

[표 4-6]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필요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	104	73.2
지정 기준은 불필요하다.	9	6.3
잘 모르겠다.	29	20.4
합계	142	100.0

(2) 지정 기준의 준거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준거로 제시한 3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현재 상태를 고려한 기준 마련’에 동의한다는 응답(96.5%)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준 마련’이 동의 응답(88.7%)이 많았음
 - ‘대안학교 설립·인가 기준 및 각종학교의 설립·인가 기준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에 동의하는 응답(54.9%)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조사 결과, 대안학교 관계자는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한 기준 마련’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준 마련’에 적극 동의하는 반면, ‘대안학교 설립·인가 기준 및 각종학교의 설립·인가 기준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에는 소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에서 적용하는 대안학교 설립 기준 내용은 달리하더라도 설립 기준 항목을 적용하려면 검토와 충분한 동의가 필요해 보임

[표 4-7]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준거 동의율(근거·원칙)

(단위: 명, %)

구분	동의		비동의		합계		평균 (4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준 마련	126	88.7	16	11.3	142	100	3.20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현재 상태를 고려한 기준 마련	137	96.5	5	3.5	142	100	3.51
대안학교 설립·인가 기준 및 각종 학교의 설립·인가 기준 등 고려한 기준 마련	78	54.9	64	45.1	142	100	2.46

주: 동의=동의+매우 동의, 비동의=전혀 동의 안 함+동의 안함

3)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1) 지정 기준 항목별 필요도와 우선순위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으로 제시한 7가지 항목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보다 많았음
- 하지만 '시설과 공간(면적)(50%)', '교사의 자격 및 전문성(66.9%)'을 지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항목보다 필요도가 낮게 나타남
 - '설립(또는 운영) 목표(95.1%)', '대안적 교육과정의 운영(93.7%)', '운영기관의 독립성(81.7%)', '예산 및 학교 회계의 투명성(90.8%)', '민주적인 학교운영 및 의사결정(90.8%)' 등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조사됨
 - 시설과 공간(면적)(50%)', '교사의 자격 및 전문성(66.9%)' 등 비인가 대안학교로서 운신의 폭이 좁은 기준 항목에는 온건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됨
 - 다만 '예산 및 학교 회계의 투명성(90.8%)', '민주적인 학교운영 및 의사결정(90.8%)' 등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차원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됨
- 한편, 항목별 필요도 우선순위 조사 결과는 대안적 교육과정의 운영(1순위), 설립(또는 운영) 목표(2순위), 운영기관의 독립성(3순위) 순으로 조사됨

[표 4-8]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항목별 필요도와 우선순위

(단위: 명, %)

구분	필요 여부			우선순위 (1+2+3순위)	
	필요	불필요	모르겠음	빈도	비율
설립(또는 운영) 목표	95.1	2.1	2.8	94	22.1
시설과 공간(면적)	50.0	34.5	15.5	15	3.5
교사의 자격과 전문성	66.9	23.2	9.9	44	10.3
대안적 교육과정의 운영	93.7	3.5	2.8	109	25.6
운영 기관의 독립성	81.7	7.7	10.6	62	14.6
예산과 학교 회계의 투명성	90.8	2.1	7.0	50	11.7
민주적인 학교 운영 및 의사결정	90.8	2.1	7.0	52	12.2
합계	-	-	-	426	100

(2) 교사 자격 기준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중 교사 자격 기준 설정에 관한 조사 결과, '실제 교육 경력을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8.2%,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7.5%로 0.7% 차이로 갈렸음
 - 실제 교육경력을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대안교육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교육경력과 경험이 실제 현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배움의 안정성 및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등을 들었음
 - 기타 의견도 21.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각 학교현장 조건에 맞춰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에 대한 이해, 대안 교육철학 등을 자격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표 4-9] 교사 자격 기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두어야 한다.	39	27.5
실제 교육 경력을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	40	28.2
자격 및 교육 경력 모두 필요하다.	24	16.9
자격이나 경력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	9	6.3
기타	30	21.1
합계	142	100.0

- 대안교육의 성격상 실제 교육경험을 중시하고 있는 현장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그렇지만 ‘최소한의 자격 기준’에 관한 의견도 비슷하게 나타나 교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최소한의 자격 기준’과 ‘경력’을 아우르는 기준 적용의 검토가 필요함

(3) 교육과정 기준

- 교육과정은 ‘자율적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한다’(42.3%)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그다음은 ‘자율적 교육과정과 함께 최소한의 공통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한다’(30.3%), ‘교육과정에 대한 지정 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27.5%) 순임
- 교육과정 기준 조사 결과는 자율적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대안학교 현장의 인식과 철학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통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적지 않아, 자율성은 보장하되 최소한의 공통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함

[표 4-10] 교육과정 기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율적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60	42.3
자율적 교육과정과 함께 최소한의 공통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43	30.3
교육과정에 대한 지정 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	39	27.5
합계	142	100.0

(4) 시설 기준

- 시설 관련 기준으로 제시한 7가지 항목 중 ‘일반교실’(66.9%), ‘취사실 및 식당’(50.0%), ‘특별활동실’(42.3%) 등 3가지 항목만 지정 기준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 7가지 항목 중 ‘교사(校舍) 면적’, 실내외 체육시설, 운동장, 강당 등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표 4-11] 시설관련 기준 항목별 필요성

(단위: %)

구분	필요	불필요	모르겠음	합계
교사(校舍) 면적	38.0	43.0	19.0	100
일반교실	66.9	28.2	4.9	100
특별활동실	42.3	41.5	16.2	100
실내외 체육시설	25.4	54.2	20.4	100
운동장	12.7	62.7	24.6	100
강당	25.4	54.2	20.4	100
취사실 및 식당	50.0	36.6	13.4	100

- 초등과정은 ‘교사(校舍) 면적’ 기준으로 최소 1인당 3.3㎡(아동시설 면적 기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적당하다+더 넓은 면적이어야 한다’(38.0%)는 의견과, ‘면적 기준이 불필요하다’(33.1%)는 의견이 양편으로 갈라짐
 -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5.4%로 다소 높게 조사됨
 - 면적 기준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적당하다’와 ‘더 넓은 면적이어야 한다’ 의견이 38%라는 점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이상적으로는 면적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추측됨

[표 4-12] 교사면적 최소 기준으로 1인당 3.3㎡ 적용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더 좁은 면적이어야 한다.	5	3.5
더 넓은 면적이어야 한다.	26	18.3
적당하다.	28	19.7
잘 모르겠다.	36	25.4
면적 기준이 불필요하다.	47	33.1
합계	142	100

4)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

(1)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간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간으로 3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35.2%로 가장 높았음
 - ‘5년’과 ‘6년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각 26.8%, 28.2%로 나타남
- 종합해보면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간은 3년 이상으로 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임

[표 4-13] 서울형 대안학교 적당한 지정 기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1년	3	2.1
2년	11	7.7
3년	50	35.2
5년	38	26.8
6년 이상	40	28.2
합계	142	100.0

(2) 수업료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후 수업료 부과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지정 이후에도 각 학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66.9%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이런 결과는 자부담 경비에 따른 대안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서울시가 지정 이후 적정 수업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4-14]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수업료 부과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료는 부과해야 한다	19	13.4
지정 이후에는 수업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28	19.7
지정 이후에도 각 학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95	66.9
합계	142	100.0

- 수업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28명을 제외하고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후 적절한 수업료 비용을 물어본 결과, '15만 원~20만 원 미만'과 '20만 원~30만 원 미만'이 각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5] 서울형 대안학교 적정 수업료 비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5만 원 미만	6	5.3
5만 원~10만 원 미만	16	14.0
10만 원~15만 원 미만	19	16.7
15만 원~20만 원 미만	26	22.8
20만 원~30만 원 미만	26	22.8
30만 원 이상	21	18.4
합계	114	100.0

- 수업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은 '필요하다'는 응답(37.3%)이 가장 많았지만, '필요하지 않다'(29.6%)는 응답과 7.7% 차이밖에 나지 않았음
 -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3.1%로 높게 나타남
 - 조사 결과, 수업료 상한제에 관한 현장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이 아직 미정인 것으로 보임
 - 향후 서울시에서 의견 수렴과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것임

[표 4-16]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후 수업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필요하다	53	37.3
필요하지 않다	42	29.6
잘 모르겠다	47	33.1
합계	142	100.0

(3) 서울형 대안학교 발전을 위한 필요 사업

- 서울형 대안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제시한 6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 항목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최소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 특히 '서울형 대안학교 협의체 구축'(85.2%), '서울형 대안학교 교사 대상 보수교육'(82.4%), '서울형 대안학교 예·결산 시스템 구축'(81.7%) 등 3가지 사업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남
 - 전 영역에 걸쳐 서울형 대안학교 발전을 위한 사업 실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표 4-17] 서울형 대안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단위: %)

구분	필요	불필요	합계
서울형 대안학교 컨설팅 실시	68.3	31.7	100
서울형 대안학교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73.2	26.8	100
서울형 대안학교 교사 대상 보수교육	82.4	17.6	100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 매뉴얼 마련	62.7	37.3	100
서울형 대안학교 예·결산 시스템 구축	81.7	18.3	100
서울형 대안학교 협의체 구축	85.2	14.8	100

3_FGI 결과 분석

58

1) 인력

■ 교사 자격 기준 적용 관련 의견

- 그간 비인가 대안학교는 특별하게 교사 자격에 대한 요구가 없었고, 각 대안학교에서 학교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현행과 달리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할 시 비인가 대안학교의 질을 좌우할 교사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을 두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해서는 입장과 조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줌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 시 교사 자격 기준 항목 필요성은 최소한의 검증 절차로 교사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각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 자격 기준은 필요 없다는 의견으로 갈림
- 아동·청소년기관에 적용하는 것처럼 교육 및 청소년 관련 국가자격증 보유자로 교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 자격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함
 -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청년지도사 등 국가자격증은 공교육의 대안적 성격을 지닌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일할 교사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이런 기준이 오히려 각 기관에서 대안교육을 잘 이해하는 교사를 뽑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04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데 기준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사 자격증이 나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 같은. 학교이기 때문이에요...(중략)...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은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그런 자격증 없는 교사 분들에게는 경력기준이 맞다고 봐요. 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라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요구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학교 교사 이지영²¹⁾-

교사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 학교가 원하는 교사가 적합하다고 한다면 뽑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략)... 사범대나 교대에서 교육 훈련 받으신 분들이 몇 %가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교육을 벗어나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최소 기준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O학교 교장 조성훈-

각 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대안학교인 경우 여행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자격증이 없어서 교사로 채용을 못한다고 하면 억울한 일이잖아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더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진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H학교 대표 강석현-

- 대안학교 교사 기준으로 적절한 자격 기준이 없으니 별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이수자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서 민간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어떻게 싶어요. 교육을 통해서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통과하면 서울형 대안학교 민간자격증을 부여해주는 것이죠.

-H학교 대표 강석현-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대안학교 교육 양성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나 이런 자격증보다도 대안학교 교사 양성과정 이런 교육 이수 이렇게 자격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학교 교사대표 정일현-

21) 참석자 이름과 소속 가명처리

- 그 외 의견으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교사 자격 기준은 별도로 설정하지 말고 부적격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됨

자격증(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에 문제에서 최소한 4년제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최소한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K학교 대표 정지우-

대안학교마다 어떤 자격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철학이라든지 학력 등 교사들 프로필을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다만,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교원이 될 만한 잘못된 요소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Q학교 교장 주민기-

2) 교육과정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으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
-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필수교육과정을 정할 때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공통적인 과정을 정리하자는 의견 제시
- 공통 교육과정을 정하더라도 학교별로 교육내용의 자율성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
- 이외에도 최소한의 도구과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반면, 공통 교육과정이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관련 기준이 아예 필요 없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

이미 각각의 학교들이 교육과정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육과정들을 뽑아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성장이라든지 인지능력 향상이라든지 진로 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낸다고 하면, 이미 공통된 요소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 공통성을 뽑아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략)… 하지만 서울형으로 지정이 된다 할지라도 교육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지는 부분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형이 된다고 해서 획일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갖춰야한다고 제한을 하면 징검다리 거점공간의 특성이 약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E학교 대표 강미영-

예를 들어, 기초교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한국사나 사회나 도덕이나 이런 것처럼요. 일반학교처럼 할 수는 없지만 도구과목을 요구할 텐데, 그건 말만 다르지 우리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초교과 수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지만, 2~3과목은 채울 수 있다고 봐요. 학교 특성에 맞춰서 채울 수 있으니까요.

-K학교 대표 정지우-

-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후기청소년의 진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과정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프로그램으로 애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특히 20세부터 22세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파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시켜야 되는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해요.

-A학교 대표 강정미-

3) 시설

- 시설 기준 적용 시 민간에서 기준에 맞는 시설을 확보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학교는 공공 혹은 민간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거나 높은 임대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기초 현황조사에서도 드러남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거의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전세라도 얻으면 감사한 상황인 것이고 매달 임대료를 합치면 1년에 1억에 가까운 상황인 것이죠.

-G학교 교사대표 윤성태-

저희 학교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 3번을 이사를 했어요.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요. 그랬을 때 매번 공간의 특성이 바뀌는 거예요. 상권 건물이라든지 주택 건물이라든지 바뀌는 것이죠. 보통 3년 정도로 계약을 하는데요. 특정 공간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는 게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공간을 확 바뀌었을 때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N학교 교무부장 정윤아-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너무 열악해요. 상담실이 곧 교육실이고, 교육실이 식사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으로 교육공간, 상담실 등 공간부분들이 확보하라고 하면 지정이 아예 안 되겠죠.

-E학교 대표 강미영-

- 시설 기준으로 청소년 인권 차원에서 최소 면적 기준 적용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함

- 하지만 서울의 높은 임대료와 잦은 이사로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설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저희가 대안학교나 공간을 운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시설 기준을 적용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청소년 시설이면 청소년 시설에 준하는 기준과 자격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저희는 계속 빠져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형 대안학교를 한다고 하면 일정 시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주 기본일 것 같아요.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든 아이들이든 안전이나 또는 경력이든 등등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R학교 대표 송은진-

서울시에서 시설 기준을 현재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동감하지만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학교들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중략)...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자원을 투자해서 학교들이 그런 외형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근데 그런 지원 없이 개별 학교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기준만 만들어놓고 여기까지 도달하라고 무조건 요구한다면 과연 서울형 대안학교 취지에 맞는 건가 그런 생각해요.

-P학교 교사대표 최인호-

-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같이 사용하거나 유휴공간 활용 방안이 필요함을 제기
- 직접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건물 및 학교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도 절실하다는 의견 제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 이런 것들을 대안학교에게 제공을 한다면 시설비 지원보다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영세한 학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과 있는 공간의 문을 개방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체육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해준다면 아이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J학교 대표교사 김주현-

- 비인가 대안학교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시설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간형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의 의견도 있음
- 공간형은 전일제형과 달리 이용자의 변화가 많아 이용자를 기준으로 잡기 어려움이 있어, 기준점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

4) 지원 대상

■ 이용자 현황 및 특성

- 최근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이 학력 취득 및 진로 모색을 목적으로 징검다리 거점공간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
- 중고등학교 시기 비행,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20대 초반이 되어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징검다리 거점공간을 찾아옴
-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초반 청소년은 부모의 지원이 없어 성인기를 준비해야하는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에 달라진 점은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거점공간을 많이 찾는 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나이대 아이들이 공간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주변으로부터 지지받는 것이 약하고 불안해지니까 버팀목이 되어줄 거점공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졌어요.

-A학교 대표 강정미-

남자들의 경우 군 입대 전후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중략)… 학력 취득을 놓친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사교육을 통해 학력 취득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중략)… 미혼모 중에는 육아를 마치고 20대 중·후반 아이들이 오면 받아주고 있어요.

-K학교 대표 정지우-

아무 연락도 없던 애가 스무 살 되가지고 뭐 하러 오냐면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못 써서 와요. 왜냐면 학교를 때려 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걸 쓸 기회가 없잖아요. 요새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데 애들이 그걸 못 배우고 나온 거예요. 부모도 못해주고요

-D학교 대표 황성주-

■ 지원 대상 기준

- 지원 연령과 관련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24세까지를 지원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만 24세까지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예외기준을 두어 탈북청소년, 장애 등 특수한 상황으로 학령기를 놓친 성인까지 포함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로 24세까지 대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난 다음에 길게는 몇 년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생각이 깊어지면서 스무 살 때 노크를 해요. 여기를 가볼까 하면서요. 그렇게 다니다가 관계적인 것이 지속이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4세까지는 청소년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기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E학교 대표 강미영-

23~24세를 넘어서면 이 친구들 스스로가 본인의 정체성을 여기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별로 청년팀이 별도로 있기도 하고요. 그 이후 나이에는 청년팀을 통해 청년정책에 맞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보내는 거죠.

-I학교 교사대표 김영선-

탈북자들은 나이로 따질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어도 초등학교부터 들어가거든요. …(중략)… 24세를 기준으로 두고 예외기준을 두면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기준점을 마련하고 특수한 예외기준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H학교 대표 강석현-

-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건강, 비행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안가거나 못하는 학생이 비인가 대안학교를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제시

학교 밖이라고 이야기하면 학교를 완전히 자퇴하거나 학교 학생이 아니어야 학교 밖인지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원적학교의 학생은 졸업장은 받지만 건강 때문에 학교를 실제로 다니지는 못하거나 학교를 다닌다고 되어 있지만 거의 10시쯤 갔다가 1~2시간 하고 오거나 하는 정도가 많아요. …(중략)… 학교생활이라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 빈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수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C학교 대표 윤진아-

5) 수업료

- 인건비, 임대비 등이 지원된다면 수업료 상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과 각 학교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수업료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교육활동에 필요하다면 체험비 형식으로 운영하여 각 학교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

다른 것을 지원해주면 저희가 현재 받고 있는 수업료를 그렇게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또 저희 학교로 오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거든요. …(중략)… 학교 상황 상 어쩔 수 없이 운영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F학교 교사 이효준-

수업료가 높은 학교도 수업료 범위 안에서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지원이 늘어나면 하지 못했던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 수업료를 지원해주니까 수업료를 낮춰야겠다 이 방향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K학교 대표 정지우-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와 논의해서 수업료 개념이 아니라 프로그램 비용 형식으로 더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수업료 부분이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학교 밖 특성을 살려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I학교 교사 이지영-

6) 기타

66

- 서울형 대안학교 브랜딩은 대안학교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위험요소가 많은 의견도 제시

서울형 대안학교라는 이미지가 저는 또 하나의 유형화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안학교를 유형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봐요. 대안학교를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조건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서울형 대안학교로 브랜딩을 한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K학교 대표 정지우-

저는 서울형 대안학교의 취지가 이런 것이라고 이해했거든요. 기존에 잘 운영되던 학교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학교들 간에 경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학부모들이 학교들마다의 퀄리티 차이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정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학교들이 지원을 고르게 잘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받는 많은 학교들이 지원을 받아야 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N학교 교무부장 정윤아-

- 비인가 대안학교 중 공간형(징검다리 거점공간)은 전일제형과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징검다리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징검다리가 없었겠죠. 있는 이유가 사실은 뭐냐 하면 여기저기서 도저히 교육청이 커버하지 않은 아이들. 그 다음에 복지부가 담을 수 없는 친구들. 법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가부에서 손이 안 닿는 아이들. 경찰청에서 빼 놓은 아이들.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할 일 다 못하고, 교육청이 할 일 다 못하고... 이런 애들이 결국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중략)... 지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생계를 꾸려야 하는 아이들이 알바를 석 달하고 때려치나요? 석 달하는 기간 동안엔 절대 아무 곳도 못가요. 네트워크 학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공공기관이 커버할 수가 없어요. 개들은 밤 11시에 일이 끝나거든요. 그런 애들을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개들이 자다가 눈 떠가지고 뭐 해볼까 해가지고 한 번 오는 건데, 서울시가 그건 출석이 안 되고 명단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시 또 헤매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죠.

-D학교 대표 황성주-

일단은 징검다리 거점공간의 특성을 인정해서 서울형 대안학교 안에 놓는다면, 공간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분명히 있죠.

-B학교 대표 박우진-

4_소결과 시사점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설문과 FGI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종사자의 76.7%가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이미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 현장 관계자·교사 간담회 또는 ‘서울형 대안학교 협의회 TF’²²⁾ 등에 현장 관계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 비인가 대안학교 종사자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73.2%)하며, 불필요하다는 의견(6.3%)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의견
- 지정 기준의 준거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학습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준 마련’(88.7%)과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한 기준 마련’(96.5%)에 높은 지지를 표명했고, ‘대안학교 설립·인가 기준 및 각종 학교의 설립·인가 기준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54.9%)에는 절반 정도만 찬성의 입장을 표시함
 - 이는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으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지지 입장을 보인 반면, 인가형 대안학교에 준하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 서울시가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으로 비인가 대안학교를 선정하기 보다 지원을 강화한다는 인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지정 기준 항목은 ‘설립(또는 운영) 목표’(95.1%), ‘대안적 교육과정 운영’(93.7%),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의사결정’(90.8%),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90.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²²⁾ 서울시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에 걸쳐 TF 회의를 하였으며, 2019년 4월 23일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교사의 자격과 전문성’(66.9%), 시설과 공간(50.0%)은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었는데, 이는 비인가 대안학교 당사자에게 실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됨.
- 주요 지정 기준별로 설문조사와 FGI에 따라 유사 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의견으로 수렴됨
 - 교사 자격 기준은 필요하지 않다(6.3%)는 의견보다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실제 교육 경력 기준’(28.2%)과 ‘최소한의 자격 기준’(27.5%)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사됨
 - FGI에서는 구체적으로 최소 자격 기준 설정은 “최소한의 검증 절차”대 “기관별 특수성 반영한 인력 확보”로 팽팽한 입장 차이가 견지됨
 - 종합해 보면, 교사 자격 기준 적용 시 대안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사의 역량을 확보 또는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역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 기준은 ‘자율적 교육과정 마련’(42.3%)이 ‘자율적 교육과정과 함께 최소한의 공통 교육과정 마련’(30.3%)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돼, 비인가 대안학교 종사자가 대안교육의 정신과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지한다는 것을 시사함
 - FGI에서는 설문과 달리 공통 교육과정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초교육과정 필요성에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
 - 그렇지만 자율적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어 서울시가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에서 그간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하는 자율적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초적인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의 기준이 필요함
- 시설 기준으로 최소 면적 기준이 불필요하다는 의견(33.1%)이 많아 비인가 대안학교가 현재 처한 시설과 공간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FGI에서는 인권 측면에서 최소 면적 기준의 적용은 필요하되, 다만,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

- 최소 면적 기준은 관계자들의 의견으로 볼 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당장은 충족이 어렵다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인권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가 충당하는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을 시사하는 것임
- 세부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지정 기간은 전체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것(3년/35.2%, 5년/26.8%, 6년 이상/28.2%)을 선호하여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으로 안정적인 학습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서울시가 계획에 발표한 바와 같이 3년 지정을 가져가되,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지정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수업료 부과와 관련해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37.3%)는 의견이 불필요하다(29.6%)는 의견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FGI에서도 상한제 도입을 지지하는 의견과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가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후 수업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검토해야 할 것임
 - 현재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는 현실,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선 마련이 필요하지만, 서울시 지원이 확대 되면 수업료를 부담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학교교육 체계에서 무상교육이라는 점에서 형평을 고려한 지원책의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과 관련해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는 서울시가 컨설팅 실시, 모니터링 및 평가, 보수교육,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 매뉴얼 마련, 예·결산 시스템 구축 및 서울형 대안학교 협의체 구축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후 서울시가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을 시사함
 - 또한 FGI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접하는 어려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함께 하기도 하는 부분, 또는 만 24세 이상의 청년이 포함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모집 대상 연령의 상한 기준의 마련에 대한 필요를 시사하고 있음

- 종합하면, 설문조사 결과와 FGI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대상자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아직 논의 중인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됨
 - 특히, 교사 자격 기준, 시설과 공간 기준, 수업료 상한선 설정 등의 문항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가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과 운영 전략

- 1_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목표와 방향
- 2_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
- 3_서울형 대안학교 운영 전략과 정책 제언

05.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과 운영 전략

1_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목표와 방향

1) 서울형 대안학교의 개념과 지향

(1) 서울형 대안학교란?

- 본 연구에서 서울형 대안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 진로 탐색을 추구하는 자율적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서울시 지정 기준을 구비한 대안교육기관”을 말함
- 서울형 대안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서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과 진로 탐색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과 공간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와 자율적인 교육과정 또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라 할 수 있음

[표 5-1] 서울형 대안학교 정의와 특징

구분	내용
정의	‘서울형 대안학교’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창의성이 보장되고 서울시가 인정한 대안학교”로 정의
특징	공교육의 틀에서 탈피, 창의적인 역량과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율적 시민의식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학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학교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학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출처: 서울시, 2019. 6.,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

(2) 서울형 대안학교의 지향

- 대안학교가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종래의 학교교육과는 다른 학교(대안교육백서, 2007)라는 점에서, 서울형 대안학교 역시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음
- 서울형 대안학교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되,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이념과 지향 역시 실현할 수 있어야 함
- 서울형 대안학교가 지향해야 할 점은 의견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율성 신장, 개별성 존중, 존엄성 존중, 조화와 통합·돌봄과 배려 추구, 공동체 지향이라 할 수 있음



[그림 5-1] 서울형 대안학교의 지향점

- 대안교육의 이념과 지향을 달성하기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가 추구할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자발성 신장 추구
 -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으로 자발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감수성 양성
 -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하도록 함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함양
 -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를 이해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하도록 함
- 진로개척 능력 함양
 -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진로 체험 및 진로 탐색을 통해 진로개척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함

2)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목표와 방향

■ 정책 목표

- 학교 밖 청소년의 균등한 학습권 보장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교육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마련하여 제공

■ 정책 방향

-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은 공공성 강화, 책무성 강화, 전문성 향상, 다양성 강화 및 투명성 확보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관인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여 대안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된 비인가 대안학교는 그에 걸맞는 책무성을 갖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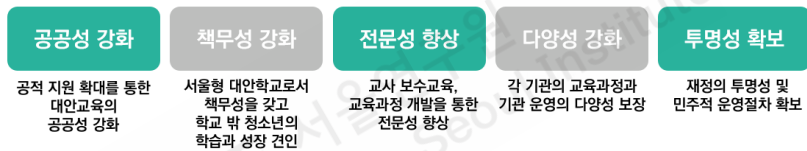
-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가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감
 -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 추진 시 개별 비인가 대안학교가 설립 목표와 취지에 맞게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과 더불어 운영상 재정 투명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상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5-2]와 같음

목 표

학교 밖 청소년의 균등한 학습권 보장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 학교교육 중단 여부와 관계 없이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기회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제공

정책방향



[그림 5-2] 서울형 대안학교의 목표와 정책 방향

2_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

1) 지정 기준 설정을 위한 기본원칙

-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 대상 공적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향후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원해야 할 것임
-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은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에서라도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출발함

- 이를 위해 다음의 5가지 원칙을 설정함
 - 제1원칙: 교육기회 제공의 원칙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에서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습 외 진로·직업 탐색을 지원함
 - 제2원칙: 무상 제공의 원칙
 -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함
 - 제3원칙: 보충 지원의 원칙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소 환경의 마련을 지원함
 -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부담을 최소화함
 - 제4원칙: 자율성 및 독립성의 원칙
 - 기본교육과정(민주시민교육) 외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
 -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함
 - 제5원칙: 공공성의 원칙
 - 교육의 목적이 공익을 추구하며 책무성을 담보함
- 이상의 원칙과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2]과 같음

[표 5-2]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설정을 위한 기본원칙

구분	내용	세부내용
원칙 1	교육기회 제공의 원칙	1.1.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에서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1.2.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습 외 진로·직업 탐색을 지원한다.
원칙 2	무상 제공의 원칙	2.1.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원칙 3	보충 지원의 원칙	3.1.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소 환경의 마련을 지원한다. 3.2.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원칙 4	자율성 및 독립성의 원칙	4.1. 기본교육과정(민주시민교육) 외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한다. 4.2.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원칙 5	공공성의 원칙	5.1. 교육의 목적이 공익을 추구하며 책무성을 담보한다.

2) 지정 기준 항목 설정

- 서울시가 서울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중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 비인가 대안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하는 인가형 대안학교와 달리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을 높게 설정하게 되면 현황에서 분석했던 현재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 설문조사 결과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는 지정 기준이 필요(73.2%)하며,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재를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96.5%) 응답
- 지정 기준을 위한 항목은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 대안학교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함
 - 교육활동을 위한 핵심 요소인 교육과정(교육내용), 교육 공간(시설) 및 인력(자격)을 기본적인 필수 기준 항목으로 설정
 - 이 외에도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투명성, 독립성과 민주성을 부가 기준 항목으로 설정

[표 5-3] 지정 기준 항목

항목	내용
필수 기준 (3개 요소)	인력(자격)
	교육공간/시설
	교육과정
부가 기준 (2개 요소)	투명성
	독립성/민주성

(1) 필수 기준 항목

■ 인력(교사) 기준

- 비인가 대안학교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기관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이나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함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형 대안학교의 교사(길잡이 교사 등)는 교육 및 유관 경력을 갖춘 자로 기준을 마련함
 - 교사의 자격 기준을 설정해 정규 교원 및 유사 직군에 준하는 처우로 개선 가능²³⁾
- 경력은 인가형 대안학교와 달리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
 - 교원 자격(유·초·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 외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유관 국가자격증 소지자²⁴⁾
 - 다만, 현재의 비인가 대안학교에서의 경력을 인정하되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도입 이후 신규 교사에게는 새로운 기준 적용 필요

■ 교육 공간(시설) 기준

-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최소 공간 기준을 마련함
- 최소 면적 기준 설정은 학교 밖 청소년도 쾌적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최소 면적 이상의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임
- 인가형 대안학교의 교사 면적 기준(제2장 3절 참조)이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 면적 기준인 3.3㎡와 7㎡를 적용

[표 5-4] 대상별 최소면적 기준

(기준: 1인당)

대상	필요면적
초등	3.3㎡
중등	7㎡

23) 또한 신규 교사의 진입이 활발할 수 있음.

24) 유사 사업의 자격 조건은 '부록 5 대안학교 유사 사업 및 시설 인력 자격 조건' 참조

■ 교육과정 기준

- 대안학교는 공교육 교육과정과 달리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안교육이 공교육의 대안적 모색에서 출발한 만큼 교육과정에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함
- 서울형 대안학교도 비인가 대안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정 수립·운영 시 자율성의 존중과 더불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최소 기준으로 설정
- 최소 기준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 및 내용은 사회과 관련 내용(시민의식, 지역사회 이해, 인권, 평등, 공동체, 정의 등)으로 구성
 - 민주시민 소양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최소 시간 등은 향후 지침에서 마련하도록 함²⁵⁾

(2) 부가 기준 항목

■ 투명성

- 서울형 대안학교는 예·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운영 기준을 설정함
- 예·결산의 투명 운영을 위한 지정 기준을 설정해 서울시 통합 회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독립성 및 민주성

- 서울형 대안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기관의 독립적 운영을 기준으로 설정함
- 민주적 운영을 위해 의사결정 구조(학교운영위원회 등)와 절차 등의 마련 기준을 제시
- 독립적 운영을 위해 법인으로부터의 독립적 운영 절차와 구조 마련의 기준을 제시

²⁵⁾ 인가형 대안학교의 기본교육과정으로 국어와 사회(중등과정의 국사, 역사 포함)를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50% 이상을 운영해야 함.

3_서울형 대안학교 운영 전략과 정책 제언

1) 운영 전략

(1) 지정 방안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에 따라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비인가 대안학교의 지원 방식으로 구현
-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는 몇 가지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과 그에 따른 서울시 지원을 함께 하는 방식(시나리오 I)과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과 지원을 분리하는 방식(시나리오 II)으로 구분

■ 시나리오 I: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과 지원

- 서울형 대안학교를 전일제형과 공간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 운영
- 모형별로 지정 기준에서 차이를 두되 일부는 공통 기준을 적용
 - 인력 자격 기준과 교육 공간(시설)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공간형은 학습 프로그램보다 정서 상담, 진로직업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표 5-5] 유형별 적용 기준

기준	기준 요소	내용	전일제형	공간형
필수 기준	인력(자격)	- 교육 및 유관 경력자 - 교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 ※ 재직자는 경과 조항 적용	○	○
	시설/공간	1인당 최소 면적 구비 - 초등: 인당 3.3㎡ - 중등: 인당 7㎡	○	○
	교육과정	- 기본 교육과정 최소 이수 시간 준수 - 기타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	-
부가 기준	투명성	-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결산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	○
	독립성/민주성	- 법인/기관·단체로부터 독립적 운영 - 교육과정 구성과 편성에서의 독립성 확보 - 운영의 민주성 확보(규칙, 절차 준수)	○	○

- 지정에 따른 지원에서는 동일하게 지원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에 따른 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등 동일 지원함

■ 시나리오 II: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과 지원을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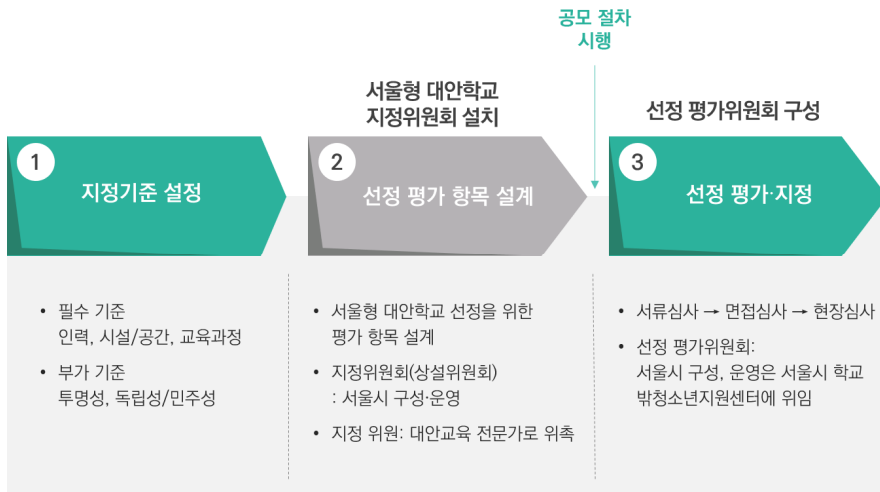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조례에 따라 신고하는 대안교육기관은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원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하지만, 별도의 예산 지원은 하지 않음
- 다만, 지정 비인가 대안학교에게 컨설팅 및 보수 교육을 제공하고,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 이상의 시나리오별 지정 방안을 표로 제시하면 [표 5-6]과 같음

[표 5-6]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지정 방식	유형별(전일제형과 공간형) 지정 운영	- 신고 대안교육기관은 지원(예산 지원 가능) - 지정 기준 부합 기관은 지정
지원 방식	- 유형별 지정 기준 상이 - 세부 지원항목 중 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등은 동일 지원	- 지정을 통한 비현금 지원 제공 - 질 관리 강화, 컨설팅과 보수교육 등 제공(약간의 인센티브 제공)

(2) 지정 절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의 마련과 더불어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서울형 대안학교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며, 서울형 대안학교 선정평가위원회는 서울시가 구성, 선정 평가 절차를 밟거나 또는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위임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위원회 설치
 - 지정위원
 - 대안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 대안교육 현장 전문가로 위촉
 - 지정위원회 역할
 - 지정 기준 확정,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을 위한 선정 평가 지표 검토, 지정 기간, 지정 취소 심의 등 지정 관련 제 사항
- 서울형 대안학교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서울시는 선정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



[그림 5-3] 서울형 대안학교의 지정 절차

(3) 운영 관리 전략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은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공교육에 준하는 교육기회와 환경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함
- 서울시는 지정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 매뉴얼 마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은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서울시의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 따라서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후 지정 기준을 근거로 하여 지정된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에 예산·비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
- 예산 지원은 인력과 관련된 인건비, 공간과 시설과 관련된 임차비, 교육과정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및 수업료 지원이 해당됨
- 예산 지원은 현황 분석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에 따라 세밀한 지침과 기준이 필요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후 예산 지원 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예시로 정리하면 [표 5-7]과 같음

[표 5-7] 지정 이후 예산 지원 시 검토 사항

구분	내용	검토 사항
인력	인건비 지원 규모	- 최소 규모/최대 규모 산정 방식 - 학교 밖 청소년 인당 지원 방식(정원 대비 지원 인건비 규모 산정)
	인건비 지원액(1인당)	- 네트워크 학교 기준 인당 200만 원 지원(2019년 기준) vs 유사 직종 기준 적용 여부 - 연봉 방식 vs 호봉 방식(경력 인정 여부)
교사 자격	(국가)자격 기준 적용	- 기관 당 자격보유자 수 최소 기준 마련 여부 - 신규 인력에 적용/재직인력은 경험 등 인정 방안
	기타 자격 적용	인정 여부
시설	최소시설 기준 적용	공간형 1인당 최소 기준 적용 후 최소 기준 적용을 위한 예산 지원 여부 등
	시설 임차비 지원액	인당 적용 vs 상한액 설정
수업료	수업료 징수 여부	상한액 설정 vs 자율 결정
	수업료 부과 기준	인건비 지원 규모와 연동한 산식 적용 후 상한액 적용 등

■ 지정 평가 결과 피드백 제공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의 최저 기준을 비인가 대안학교가 차츰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지정 선정 평가 항목별로 개별 비인가 대안학교가 충족하지 못한 최저 기준을 파악하여 최저 기준을 달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향후 지정 선정 평가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은 선별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의 성격이므로, 최저선을 맞추도록 평가 결과 피드백을 활용하게 함

■ 주기적 컨설팅 실시

- 비인가 대안학교를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서울형 대안학교의 질 관리를 유지 하는 것임
- 서울형 대안학교가 학교 밖 청소년과 그 부모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이 필요

- 컨설팅은 지정 후 2년마다 매 기관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안교육·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현장 컨설팅을 포함한 컨설팅으로 실시
- 컨설팅은 향후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관리 전담 조직의 업무로 수행함

■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주기적 보수 교육 실시

- 대안교육의 특성상 공통의 교육과정을 구비하기보다 개별 비인가 대안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수립·운영하고 있어, 교사의 역량에 따라 대안교육의 질의 좌우될 개연성이 큼
- 지정 기준 항목의 하나로 교사의 자격을 두었지만 이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급변하는 교육 트렌드와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역량에 맞춘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함
-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계획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과 관리 전담 조직 마련

- 서울시가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해 비인가 대안학교의 공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정 이후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담당할 전담 조직이 필요
-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직접 담당할 수 있지만,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음
- 다만,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과 관리 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을 구성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제언

- 서울시가 새롭게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을 도입하여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선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초선(basic line)을 마련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음의 제언 반영으로 공적 지원이 강화될 것을 기대함

■ 시설과 공간의 공적 지원책 마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의 하나로 시설과 공간 기준을 설정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환경 구축을 중시할 것을 요청함
- 시설과 공간 최소 면적 기준은 선정을 위한 기준인 동시에 서울시가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기도 함
- 비인가 대안학교가 교육의 공공성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 임차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비인가 대안학교의 잦은 이사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환경이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적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소유하지 못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임대차 계약 시 임차비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함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옥내 공간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운동장 등 옥외 활동이 필요하므로, 서울시가 인근 공원이나 체육관, 공공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협약을 맺어 지원해야 함

■ 시설과 설비 개선비 지원 마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후 서울시는 교사 인건비, 운영비, 교육사업비 외에 비인가 대안학교의 시설과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개선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임
-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공교육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에는 향후 비인가 대안학교가 활용하고 있는 시설의 개·보수 지원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공교육에서는 시설과 설비를 국가가 구비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보수 지원이 타당하지만, 비인가 대안학교는 민간의 시설과 설비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의 적절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을 담당하는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시설과 설비 개선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서울형 대안학교의 시설과 설비 개·보수 비용 지원으로 공교육과의 시설과 설비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쾌적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

■ 교육과정 개발과 지원 방안 마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항목의 하나로 교육과정을 설정하였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기본으로 한 최소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제시하였음
-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황 분석으로 본 개별 기관의 교사 인력 등을 감안하면 교육과정 개발과 구성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됨
- 사회변화에 걸맞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며, 향후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함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후 개별 비인가 대안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추가로 학교 밖 청소년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 중단을 많이 하게 되는 통계를 고려하여 서울시가 공간형 비인가 대안학교를 집중 지원할 것을 제언함

- 김성기, 2008, 「경기도 대안학교 현황 및 지원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김미숙·백성준·옥준필, 2009, 「대안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실태 분석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용남·하봉운·엄문영 외, 2015, 「사학법인 및 사립학교 재정 운용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대안교육백서」.
- 나병현, 2002,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 「한국교육학회」, 29(2): 549~571.
- 맹영임, 20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창언, 2006, “대안학교 교육과정 법제화 방향”, 「교육과정평가연구」, 9(1).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4, 「학교 밖 청소년 백서」.
- 신태섭, 2014, “한국 대안학교의 쟁점 및 발전방향”,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정책과 실천,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자료집(2014. 9. 25. The-K 호텔 서울 3층 거문고홀)」: 389~402.
- 우소연·고재일·변상민, 2016,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효과성 연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사례」,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 윤철경·최인재·윤성렬 외, 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성윤숙·최홍일 외, 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최인재·김승경 외, 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김승경,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발간 예정).
- 안현미·양민석·서영주 외, 2011,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병환, 2007, “대안학교관련 쟁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5(4).
- 이종태·고병헌·심현각 외, 2007,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이종태, 2013, “대안교육에 대한 소고”, 『교육비평』, 32: 87~110.

이종태·하태욱·이병곤, 2018, 「대안교육 이해 증진 및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연구」, 중앙교원연수원.

진성미·정연순·이혜숙, 2009, 「징검다리 학습과정 운영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조혜정·김희옥·박복선 외, 2011, 「대안교육 종합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이학춘·심태현, 2017,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25(4): 205~229.

홍재환·윤종설·배재현 외, 2008. 「정책투명성 진단모형 개선 및 가이드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1_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리스트(71개 기관)

[표 1]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리스트(71개소)

연번	기관명	지원 여부 (2019년 5월 기준)	유형	위치 (자치구)
1	도깨비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강북구
2	바라지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양천구
3	징검다리 거점공간 나도꽃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노원구
4	스쿨 제프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도봉구
5	꿈꾸는다락방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은평구
6	청소년 도서관 작공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은평구
7	하늘을 품는 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강동구
8	1318상상발전소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종량구
9	징검다리 몽담몽담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관악구
10	징검다리 거점공간 외락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노원구
11	징검다리 거점공간JU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은평구
12	틱움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강북구
13	캔틴스쿨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공간형	마포구
14	사랑의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송파구
15	돈보스코영상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양천구
16	꽃피는학교 서울학사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서대문구
17	삼각산재미난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강북구
18	내일새싹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양천구
19	자오나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성북구
20	성장학교 별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관악구
21	우리들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관악구
22	공간민들레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성북구
23	대안학교 한들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송파구
24	하자작업장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은평구
25	영세프스쿨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은평구
26	로드스폴라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영등포구
27	푸른나무미디어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용산구
28	은평씨앗학교(청소년대안공간돌움)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은평구

연번	기관명	지원 여부 (2019년 5월 기준)	유형	위치 (자치구)
29	이룸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강남구
30	성미산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마포구
31	다음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서초구
32	대안학교 원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금천구
33	인디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성북구
34	꿈터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강동구
35	꿈이있는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구로구
36	아름다운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광진구
37	동방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은평구
38	꿈틀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종로구
39	단재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송파구
40	꿈이룸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영등포구
41	티움터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종각구
42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관악구
43	사랑사랑나눔학교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전일제형	영등포구
44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늘푸른자립학교)	지원(서울시여성정책과)	전일제형	관악구
45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지원(서울시 여성정책과)	설문 미참여	강북구
46	청소년의숲 사회적협동조합	미지원	공간형	성북구
47	문화놀이터 와플(Wild Flower)	미지원	공간형	강동구
48	사)금강학교	미지원	공간형	구로구
49	창창한작업장학교	미지원	공간형	노원구
50	벤자민인성영재학교	미지원	전일제형	강남구
51	남북사랑학교	미지원	전일제형	구로구
52	IT기독학교	미지원	전일제형	용산구
53	숲나-플레10년	미지원	전일제형	서초구
54	발도르프학교 '초록달아침'	미지원	전일제형	성북구
55	요한기독교학교	미지원	전일제형	광진구
56	이야기학교	미지원	전일제형	종로구
57	인투비전스쿨	미지원	전일제형	송파구
58	꿈땅자연학교	미지원	전일제형	영등포구
59	소보사 대안학교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미지원	전일제형	강북구
60	서울솔로몬학교	미지원	전일제형	강서구
61	반석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서초구
62	빛의자녀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성동구
63	디아글로벌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관악구
64	즐거운家	미지원	(설문 미참여)	송파구
65	K2 인터네셔널 코리아	미지원	(설문 미참여)	성북구
66	달꿈예술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강북구
67	전인기독교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송파구
68	TOM예술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양천구
69	꿈의숲 기독교혁신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마포구
70	지구여행학교	미지원	(설문 미참여)	종로구
71	미래소망스쿨	미지원	(설문 미참여)	노원구

2_서울시 초중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별 비율(2018학년도)

[표 2] 서울시 초·중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별 비율(2018학년도)

(단위: 명, %)

		합계		유예					면제			
		학업중단 학생 수	실질 학업중단 학생 수	소계	질병	장기 결석	미인정 유학	기타	소계	질병	해외 출국	기타
전체 (초+중)	학생 수	7,215	1,283	3,458	64	3	2,266	1,125	3,757	1	3,601	155
	비율	100.00	17.78	47.93	0.89	0.04	31.41	15.59	52.07	0.01	49.91	2.15
초등학교	학생 수	4,792	516	1,695	17	2	1,274	402	3,097	1	2,984	112
	비율	100.00	10.77	35.37	0.35	0.04	26.59	8.39	64.63	0.02	62.27	2.34
중학교	학생 수	2,423	767	1,763	47	1	992	723	660	0	617	43
	비율	100.00	31.65	72.76	1.94	0.04	40.94	29.84	27.24	0.00	25.46	1.77

		합계		자퇴						퇴학 (품행)	유예/ 면제	제적
		학업중단 학생 수	실질 학업중단 학생 수	소계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고등학교	학생 수	4,622	3,277	4,520	249	35	1,087	1,085	2,064	66	11	25
전체	비율	100	80.65	96.49	4.71	1.05	27.90	14.28	48.55	2.89	0.36	0.27

주: 1. 는 실질 학업중단 학생을 나타냄.

2. 실질 학업중단 학생: 가사, 부적응, 자퇴,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질병, 사고, 유학 등의 이유 제외)

3. 고등학교의 유예, 면제 대상은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4. 부적응: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5. 고등학교 자퇴 기타: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3_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조사 설문지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계획(2019. 1. 29.)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 보장을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파악 및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과 관련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조사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구체적 운영 현황과 관련한 것입니다. 기관(학교)별로 전체적인 운영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개인정보 및 설문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서울연구원

※ 해당 항목에 맞춰 ()안에 내용을 기입하거나 “v”표시를 해주시 바랍니다.

A. 기본 현황	
A1. 기관(학교)명	()
A2. 설립년도	()년
A3. 기관(학교) 소재지	서울시 ()구 ()동
A4. 설립기관과 운영기관 동일여부	() ① 설립기관과 운영기관이 동일함(☞A4b로 이동) () ② 설립기관과 운영기관이 상이함(☞A4a로 이동)
A4a. 설립기관 유형 및 기관명 (☞응답 후 A4b로 이동)	() ① 재단법인(기관명:) () ② 사단법인(기관명:) () ③ 협동조합(기관명:) () ④ 비영리민간단체(기관명:) () ⑤ 비등록 단체(단체명:) () ⑥ 기타(어떤 유형인지 기입해 주십시오)
A4b. 운영기관 유형 및 기관명	() ① 재단법인(기관명:) () ② 사단법인(기관명:) () ③ 협동조합(기관명:) () ④ 비영리민간단체(기관명:) () ⑤ 비등록 단체(단체명:) () ⑥ 기타(어떤 유형인지 기입해 주십시오)
A5. 통학방법	() ① 기숙형 () ② 통학형 () ③ 선택형(기숙사형+통학형)
A6. 모집(참여) 대상	() ① 학교 밖 청소년(세부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세부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중 특정대상을 모집할 경우 기입 (예: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 ② 학교 밖 청소년 및 일반청소년
A7. 운영방식	() ① 학교형태의 전일제 운영(☞B1a로 이동) () ② 중·단기 프로그램 및 거점공간 중심 운영(☞B1b로 이동)

B.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2018년 기준)			
B1a. 학교형태의 전일제 운영(도시형 대안학교 혹은 전일제형 운영기관만 응답)			
1). 기본 운영과정		()① 초등학교 과정(년) ()② 중학교 과정(년) ()③ 고등학교 과정(년) ()④ 초·중학 통합과정(초+중)(년) ()⑤ 초·중등 통합과정(초+중+고)(년) ()⑥ 중등 통합과정(중+고)(년)	
2) 기타과정 운영 ※ 해당 학교만 응답		후기청소년 과정 (년) 기타과정 (과정명 기입), (년)	
3) 참여자 수 ※ 정원규정이 없을 시 현원만 기입 (※응답 후 B2로 이동)	초등학교 과정	정원()명	현원()명
	중학교 과정	정원()명	현원()명
	고등학교 과정	정원()명	현원()명
	후기 청소년 과정	정원()명	현원()명
B1b. 중·단기 프로그램 중심 운영 (징검다리 거점공간 혹은 중단기 프로그램 운영기관만 응답)			
1) 모집(참여) 대상(복수응답 가능)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후기 청소년(20세~24세)	
2) 연간 중·단기 프로그램 수 ※ 1달 이상 지속 프로그램		연간 총()개	
3) 이용자수 (실인원) (※응답 후 B2로 이동)	중·단기 프로그램 참여자 수	연간 이용자 수()명 ※ 2018년 1년 동안 1달 이상 지속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인원 기입. 한 사람이 A프로그램, B프로그램을 동시에 참여할 경우 1명으로 계산	
	공간 이용자 수	연간 이용자 수()명 ※ 한명이 여러번 이용할 경우 1명으로 계산	

B2. 운영방식 및 교육내용(공동응답)	
4) 학기(대표 프로그램) 운영방식	() ① 상하반기 운영(1/2학기) () ② 분기별 운영(1/2/3/4/학기) () ③ 계절학기 운영(여름/겨울) () ④ 기타()
5) 기관(학교) 설정 교육(사업)목표	() ()
6) 중점 교육내용 (2가지 응답)	() ① 문화예술교육 중심 () ② 인문교육 중심 () ③ 심리적 치유와 성장 중심 () ④ 진로·직업지도 중심 () ⑤ 생태교육 중심 () ⑥ 기타(세부내용 내용기입)

C. 인력 및 인건비 현황(2018년 기준)			
C1. 대표		() ① 법인 혹은 단체 대표와 기관(학교) 대표 동일(겸임) () ② 기관(학교)대표 별도 고용	
C2. 상근교사	1) 인원	총 ()명 ※ 교사업무 병행 대표자 포함	서울시 지원 ()명
	2) 급여	() ① 동일급여()천 원 () ② 차등급여()천 원~()천 원 ※ 4대 보험, 제수당 포함. 1개월 평균액	
	3) 근속연수	평균 근속연수()년 ※ 예시: a교사 2년, b교사 5년, c교사 10년일 경우 $17/3 = 5.7$ 년	
	4) 자격증	교원자격증()명	
		청소년지도사()명 청소년상담사()명 사회복지사()명 평생교육사()명 그 외 기타 자격증 자격증명(), ()명	
	5)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삶을 위한 교사대학 협동조합의 대안교육 교사양성 과정 이수자 ()명	

C3. 비상근교사 /강사	1) 비상근 교사	()명 ※ 기관(학교) 소속 비상근 교사 인력	
	2) 강사	유급 ()명	무급(자원) ()명
C4. 행정 인력	1) 인원	상근 ()명 ※ 행정업무 병행 교사 제외	비상근 ()명 ※ 기관(학교) 소속 비상근 인력
	2) 급여	()① 동일급여()천 원 ()② 차등급여()천 원~()천 원 ※ 4대 보험, 제수당 포함. 1개월 평균액	
C5. 급식 인력	1) 인원	상근()명	비상근 ()명 ※ 기관(학교) 소속 비상근 인력
	2) 급여	()① 동일급여()천 원 ()② 차등급여()천 원~()천 원 ※ 4대 보험, 제수당 포함. 1개월 평균액	
C6.기타 인력 (해당 기관만 응답)		(기타인력 세부내용 기입), 인원 수 ()명	

D. 시설 현황(2019년 현재 기준)

D1. 소유 및 임차 현황		()① 소유(※D2로 이동) ※운영단체가 공간을 소유한 경우 ()② 임차(※D1a로 이동) ※ 공공시설 위탁 사용도 임차에 해당
	D1a. 임차 현황	()① 전세(※D1b로 이동) ()② 월세(연세 포함)(※D1b로 이동) ()③ 무상(※D1c로 이동)
	D1b. 임대료 (※응답 후 D2로 이동)	보증금()천 원 월 임대료()천 원
	D1c. 무상임차일 경우 소유자	()① 민간(개인, 단체 모두 포함) ()② 공공

D2. 사용 공간과 면적		공간 유무	*공간 유무에서 있음을 선택했을 시 응답	
			공간(교실) 수	총 면적
1) 사무 공간		()① 있음 ()② 없음	()실	()㎡
2) 교육 공간	일반교실 ※ 책상 의자 등 최소한의 시설이 구비된 공간. 다목적실을 교실로 사용할 경우 일반교실로 기입.	()① 있음 ()② 없음	()실	()㎡
	특별활동 교실 ※ 예: 과학실, 미술실 등 특별한 시설을 갖춘 공간	()① 있음 ()② 없음	()실	()㎡
3) 급식 시설	조리시설	()① 있음 ()② 없음	-	()㎡
	식사 공간	()① 있음 ()② 없음		
4) 운동장		()① 있음 ()② 없음	-	()㎡
5) 강당		()① 있음 ()② 없음	()실	()㎡
6) 기타 공간		()① 있음 (※6.1로 이동) ()② 없음(※7로 이동)		
6.1) 기타 공간 세부내용		예시: (카페공간)	(1)실	(33)㎡
		(공간명 기입)	()실	()㎡
7) 총 사용면적		()㎡ ※ 일부사업으로 대안학교 운영 시 전용사용면적 기준(예: 청소년수련관 등)		
8) 시설 사용방식		()① 단독사용 ()② 전체 시설 공동사용 ()③ 시설 일부 공동사용		
9) 외부시설 사용 여부		()① 외부시설 사용(상세내용 기입) ()② 외부시설 미사용		

E. 이용자 부담 경비(2018년 기준)		
항목	유무	*유무에서 있음을 선택했을 시 응답 세부내용(학생 1인 기준)
E1. 기부금/발전기금	()① 있음 ()② 없음	()천 원
E2. 예탁금 ※ 전학·졸업시 환급 가능	()① 있음 ()② 없음	()천 원
E3. 입학금	()① 있음 ()② 없음	()천 원
E4. 수업료 및 프로그램 비용 ※ 급식비 미포함. 분리 기입 ※ 프로그램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 프로그램 기준으로 기입	()① 있음 ()② 없음	-월()천 원 -운영개월 수:()개월 ※ 학기별, 분기별 책정 시 월 단위로 기입
E5. 급식비(간식비 포함)	()① 있음 ()② 없음	월()천 원
E6. 기숙사비	()① 있음 ()② 없음	월()천 원
E7. 현장학습비 (여행경비 등)	()① 있음 ()② 없음	연()천 원 ※ 1인 기준 연간 총액
E8. 학습재료비	()① 있음 ()② 없음	연()천 원 ※ 1인 기준 연간 총액

F. 서울시 지원 및 외부 지원 현황(2018년 기준)			
F1. 서울시 지원 항목	지원유무	*지원 받았을 시 응답	
		연간 지원인원	연간 지원 총액
1) 급식비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연간()명	연간()천 원
2) 인턴십 프로그램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연간()명	연간()천 원
3) 수업료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연간()명	연간()천 원
F2. 외부 지원내용 (해당 기관만 응답)	지원처	연간 지원인원	연간 지원 총액
예: (저소득층 수업료지원)	(V)① 자체기관 ()② 외부단체	연간(2)명	연간(2,000)천원
()	()① 자체기관 ()② 외부단체	연간()명	연간()천 원
()	()① 자체기관 ()② 외부단체	연간()명	연간()천 원

G. 학교 연간 재정 현황(2018년 기준)		
G1. 2018년 세입 기준	금액	퍼센트
1) 정부보조금	()백만 원	자동계산
2) 운영주체 보조금	()백만 원	자동계산
3) 일반후원금	()백만 원	자동계산
4) 사용자 이용금	()백만 원	자동계산
5) 기타수입	()백만 원	자동계산
합계	자동계산	자동계산
G2. 2018년 세출 기준	금액	퍼센트
1) 인건비	()백만 원	자동계산
2) 프로그램 운영비	()백만 원	자동계산
3) 시설 운영비(임대료 포함)	()백만 원	자동계산
4) 사무비	()백만 원	자동계산
5) 기타(예비비 포함)	()백만 원	자동계산
합계	자동계산	자동계산
응답자 정보	성함(), 연락처() ※ 설문 응답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을 시 연락을 드리기 위한 용도입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4_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설문지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계획(‘19.1.29.)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 지원을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에 대한 대안교육기관 현장 의견을 파악하여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개인정보 및 설문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서울연구원

Part1.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인지 및 개념과 지향 인식

올해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계획(‘19.1.29.)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 보장을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형 대안학교는 서울시가 그간 지원해 오던 도시형 대안학교보다 한 차원 높은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 진로 탐색과 발견 등을 조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서울형 대안학교의 정책 인지와 개념, 지향, 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형 대안학교’의 개념, 지향과 목표는 현재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서울형 대안학교 정의와 지향 방향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① 자세히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 ④ 들어 본 적이 없다.

2.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지정하려는 ‘서울형 대안학교’의 정의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기술해 주십시오.

()

3. 서울형 대안학교가 지향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존엄성 존중 ② 자율성 신장
③ 개별성 존중 ④ 돌봄과 배려 추구
⑤ 공동체 지향 ⑥ 조화와 통합 추구
⑦ 기타()

4. 서울형 대안학교가 중시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체험교육을 통해 자발성을 신장한다.
②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이해 및 일원으로서 자질을 함양한다.
③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으로 민주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감수성을 기른다.
④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으로 미래의 진로개척능력을 함양한다.
⑤ 기타()

Part2.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근접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5.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 도입과 더불어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
- ② 지정 기준은 불필요하다.
- ③ 잘 모르겠다.

6.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의 준거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 안 함	동의 안 함	동의	매우 동의
6.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준 마련	①	②	③	④
6.2.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현재 상태를 고려한 기준 마련	①	②	③	④
6.3. 대안학교 설립·인가 기준 및 각종 학교의 설립·인가 기준 등 고려한 기준 마련	①	②	③	④
6.4. 기타 ()				

7. 다음에 제시된 항목이 지정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필요	불필요	모르겠음	우선순위
7.1. 설립(또는 운영) 목표	①	②	③	
7.2. 시설과 공간(면적)	①	②	③	
7.3. 교사의 자격 및 전문성	①	②	③	
7.4. 대안적 교육과정의 운영	①	②	③	
7.5. 운영 기관의 독립성	①	②	③	
7.6. 예산 및 학교 회계의 투명성	①	②	③	
7.7. 민주적인 학교 운영 및 의사결정	①	②	③	

8. 다음의 시설 및 공간 기준 항목이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을 마련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불필요	모르겠음
8.1. 교사(校舍) 면적	①	②	③
8.2. 일반교실	①	②	③
8.3. 특별활동실	①	②	③
8.4. 실내/실외 체육시설	①	②	③
8.5. 운동장	①	②	③
8.6. 강당	①	②	③
8.7. 취사실 및 식당	①	②	③

9. 초등과정의 경우 아동시설 면적 기준인 인당 3.3㎡를 서울형 대안학교 시설 및 공간의 면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보다 좁은 면적이어야 한다.
- ② 보다 넓은 면적이어야 한다.
- ③ 적당하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면적 기준이 불필요하다.

10.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마련 시 교사(인력)와 관련한 기준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두어야 한다.
- ② 자격보다는 실제 교육 경력 기준이어야 한다.
- ③ 자격 및 교육 경력 모두 필요하다.
- ④ 자격이나 경력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
- ⑤ 기타()

☞10-1번으로

☞11번으로

10-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1.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시 교육과정은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율적 교육과정과 함께 최소한의 공통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② 자율적 교육과정으로만 마련하도록 한다.
- ③ 교육과정에 대한 지정 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

12.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시 적당한 기간은 몇 년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1년 ② 2년 ③ 3년
- ④ 5년 ⑤ 6년 이상

15.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후 서울형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불필요
15.1. 서울형 대안학교 컨설팅 실시	①	②
15.2. 서울형 대안학교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①	②
15.3. 서울형 대안학교 교사 대상 보수교육	①	②
15.4.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 매뉴얼 마련	①	②
15.5. 서울형 대안학교 예·결산 시스템 구축	①	②
15.6. 서울형 대안학교 협의체 구축	①	②

16.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응답자 소속기관 및 응답자 개인 특성

〈응답자 소속 기관 특성〉

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 ①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전일제 형태 운영(도시형 대안학교)
- ② 프로그램 및 공간 중심 운영(징검다리 거점공간)

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교사 인력과 행정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상근인력 기준)
()명

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현재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응답자 개인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나이는? 만_____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⑤ 기타()

4.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주 업무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세요)

- ① 교사 ② 행정직 ③ 기타

5. 귀하는 현 기관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다? _____년

5.1. 귀하의 대안교육 관련 총 경력은 얼마입니까? _____년

6.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교원 자격증 ② 사회복지사 ③ 청소년지도사
④ 청소년상담사 ⑤ 평생교육사 ⑥ 없음
⑦ 기타()

7. 귀하의 현재 월 급여는 얼마인가요?(세금 및 4대 보험 포함 기준)

-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만 원~150만 원 미만
③ 150만 원~200만 원 미만 ④ 200만 원~ 250만 원 미만
⑤ 250만 원~300만 원 미만 ⑥ 300만 원 이상
⑦ 무급

8. 귀하는 현재 서울시로부터 급여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_대안학교 유사 사업·시설 인력 자격 조건과 배치기준

[표 3] 대안학교 유사사업·시설 인력 자격 조건과 배치기준

사업 및 시설	직위	자격 기준
다함께 돌봄사업 (보건복지부)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 선생님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종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생활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배치기준 아동 30명 이상 생활복지사 2명(50명 초과 시 1명 추가)

[표 3 계속] 대안학교 유사사업·시설 인력 자격 조건과 배치기준

사업 및 시설	직위	자격 기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성가 족부)	팀장	1)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 후 청소년 육성 분야 및 방과후 지도 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신규채용 시 청소년지도사가 없을시(공모 후 결과에 따름)에는 재공고 절차를 통해 청소년육성분야 및 방과후 지도분야(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 방과후교실 등) 3년 이상 전문 인력 선발
	담당	1) 기운영 : 현행유지 2) 신규채용 또는 교체 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자 * 신규채용 시 청소년지도사가 없을시(공모 후 결과에 따름)에는 재공고 절차를 통해 지역내에서 청소년육성분야 및 방과후지도분야(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보육, 방과후교실 등) 1년이상 경력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자(청소년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로 선발
초등돌봄 교실 (교육부)	돌봄 전담사	1)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인력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도별 채용기준·절차 마련 ※ 자격조건에 상응하지 않은 자인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자격취득 또는 소정의 교육이수 등 조건부 채용
청소년 문화의집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배치(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이상을 배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명 당 1급, 2급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이상을 추가로 배치
국공립어린이집		1)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장애아반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포함) 2) 배치 예: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
서울형 어린이집		2020년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지표(안) 중 보육인력의 전문성 항목에 따라 가점 지표 예: 1급 보육교사가 전체 보육교사의 50%이상(+3점 가점), 70%이상(+5점 가점)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2018. 12., “20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한국교육개발원,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보건복지부, 2019,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9. 2., “서울형 어린이집 개정지표 시범평가 계획 (붙임1)2020년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지표(안)”.

Abstract

A Study on The Designation Criteria of The Seoul-type Alternative School

Hyesook Lee · Yunjung Cho

Every year about 10,000 youths in Seoul quit their studies and leave their schools. To provide alternate opportunities for these “youths out of school” to learn and/or develop their career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unauthorised alternative schools with teacher’s salary, tuition fees, and school meal expense.

In additi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plan to designate a ‘Seoul-type Alternative School’ earlier this year, to protect the right of youths out of school to learn at the level of public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criteria for selecting a Seoul-type Alternative School and the management strategy.

For this purpose firstly, we conducted a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FGI)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unauthorised alternative schools in Seoul.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policy goal of the Seoul-type Alternative School was set as “Guarantee equal learning rights for youth outside school for high quality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following five policy directions were proposed: (1) Expand government support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alternative education; (2)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of the Seoul-type Alternative School; (3)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and education; (4)

strengthen the diversity of education; and (5) secure financial transparency and democratic procedures in management.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consisted of three mandatory items and two additional items. The mandatory items were ‘qualification of teachers’, ‘education space’ and ‘curriculum’, which are the key elements for educational activities. The additional items were ‘transparency in management’ and ‘independence and democratic procedure in management’.

A minimum standard was set to lower the entry barriers for the existing unauthorised alternative schools. In other words, this will provide minimum qualifications to be equipped as a school, such as the stability of the educational space and guarantee of the quality of education, thus providing more opportunity for youth outside the school to get a chance for higher quality education in the future.



Contents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2_Content and Scope of the Study
- 3_Research Methods
- 4_Structure of the Study

02 Status of Youths Out of School and Policy for the Unauthorised Alternative School in Seoul

- 1_Concept and Status of Youths Out of School
- 2_Policy for Supporting Alternative Schools
- 3_Unauthorised Alternative School Support Programmes in Seoul

03 Analysis on the Status of Unauthorised Alternative School in Seoul

- 1_Basic status
- 2_Workforce
- 3_Users
- 4_Facility

04 Opinion Survey on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the Seoul-type Alternative School

- 1_Outline of the Survey
 - 2_Analysis of Survey Results
 - 3_Analysis of FGI Results
 - 4_Interim Conclusion and Implications
-

05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Management Strategy of the Seoul-type Alternative School

- 1_Policy Goal and Direction of the Seoul-type Alternative School
- 2_The Designation Criteria of the Seoul-type Alternative School
- 3_Management Strategy of the Seoul Alternative School and Policy Suggestions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마련 방안

서울연 2019-PR-27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19년 12월 1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465-2 93330 8,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